

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Amendments to the Legal System
for Inland Fishing Permits and Reporting

최순 · 박찬엽 · 김기완



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Amendments to the Legal System
for Inland Fishing Permits and Reporting

최순 · 박찬엽 · 김기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저자 최순, 박찬엽, 김기완

내부연구진 연구책임자 최 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박찬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김기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사업본부 연구원

연구기간 2024. 4. 22. ~ 2024. 10. 21.

보고서 집필내역

연구책임자 최 순 연구총괄, 제1,3,5,6장

내부연구진 박찬엽 제4장
김기완 제2장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신용민 부경대학교 교수
차현숙 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상옥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연구관

※ 순서는 산·학·연·정 순임

발간사

우리나라의 내수면어업은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수산자원의 활용을 통해 어업인들의 생계를 뒷받침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 들어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내수면어업에 대한 관리 방식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가 및 신고제도는 자원 보호와 어업관리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지만, 현행 내수면어업의 허가 신고제도는 어업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여러 실무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내수면어업 허가 및 신고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어업인과 관련 기관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는 어업인과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다양한 해외 사례와 제도적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이 향후 내수면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어업 현장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본 연구가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정책 담당자들에게 유익한 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더욱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어업인과 정부, 관련 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내수면 자원 보전과 어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김 종 덕

목차

정책제안 _i

요약 _v

Executive Summary _ix

01

서론_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7

02

내수면어로어업 동향_11

제1절 생산 동향	11
1. 생산 규모	11
2. 조업 규모	18
제2절 내수면어로어업의 특성	22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23

03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도 현황_25

제1절 내수면어업법의 입법 취지와 특징	25
1. 입법 취지와 연혁	25
2. 제22조 수산업법 준용 규정	27
제2절 내수면어업법 허가·신고제도 현황	29
1. 어업허가와 신고	29
2. 내수면어업법상 허가·신고 관련 조항 개정 연혁	37
제3절 지자체별 내수면 허가·신고제도 운영 현황	45

목차

04	어업 허가·신고제도 유사사례 비교분석_53	
	제1절 연근해어업 허가·신고 제도분석	53
	1. 「수산업법」 허가·신고제도의 구성과 특징	56
	제2절 어업 분야 허가·신고제도 비교분석	62
	제3절 해외 유사사례 분석	68
	1. 일본 내수면어업 관련 규정	68
	2. 미국 내수면어업 관련 규정	70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72
05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도 개선 방안_75	
	제1절 허가·신고제도 개선의 원칙과 기준	75
	제2절 어업허가·신고제 개선 과제	76
	제3절 허가·신고제도 개정(안) 제안	81
	1. 허가 신청 시 주소지 조건	81
	2. 허가 개수 제한 신설	82
	3. 신고어업 거주조건, 조업일수 준수 의무, 효력 상실 규정 신설	84
	4. 허가 지위 승계	86
	5. 허가·신고어업의 변경 및 폐업 신고	90
06	결론_97	
	제1절 정책 제언	97
	제2절 요약 및 결론	99

참고문헌_101

부록_105

표 목차

〈표 1-1〉 정책협의회 개요	5
〈표 1-2〉 선행연구 검토	8
〈표 2-1〉 연도별·어업별 생산량	12
〈표 2-2〉 연도별·어업별 생산금액	13
〈표 2-3〉 연도별·어업별 생산량	14
〈표 2-4〉 내수면어업 품종별 생산량 추이	16
〈표 2-5〉 어로어업 지역별 생산량	17
〈표 2-6〉 내수면어업 어가인구 및 어가 수	18
〈표 2-7〉 내수면어업 면허·허가·신고 현황	19
〈표 2-8〉 어로어업 면허·허가·신고 현황(2023년)	20
〈표 2-9〉 연도별 어선세력 추이	21
〈표 2-10〉 수계별 내수면어업의 특징	23
〈표 3-1〉 내수면어업법 개정 이유	26
〈표 3-2〉 준용 조항	27
〈표 3-3〉 내수면어업허가의 준용여부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28
〈표 3-4〉 「내수면어업법」 및 관련 하위법령 상 어업허가·어업신고 관련 규정	29
〈표 3-5〉 내수면어업법 허가어업 규정	31
〈표 3-6〉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어업허가신청 규정	32
〈표 3-7〉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어업허가신청서	32
〈표 3-8〉 내수면어업법 어업면허와 허가 우선순위 조항	34
〈표 3-9〉 내수면어업 신고어업 관련 조항	35
〈표 3-10〉 어업허가 관련 내수면어업법 개정 연혁	37
〈표 3-11〉 허가 관련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 연혁	41
〈표 3-12〉 허가 관할 지자체 변경 개정 내용	43
〈표 3-13〉 신고 관련 시행령 개정 연혁	43
〈표 3-14〉 내수면어업허가 신청서 및 처리절차	45
〈표 3-15〉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도 운영 관련 지자체 설문조사 문항	46
〈표 3-16〉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도 운영 관련 지자체 설문조사 결과	48
〈표 3-17〉 지자체 추가 개선 건의 사항	52

표 목차

〈표 4-1〉 어업 허가·신고제도에 관한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 분화연혁	54
〈표 4-2〉 「수산업법」 구성 및 장별 주요조항	56
〈표 4-3〉 「수산업법」 허가·신고제도 조항 주요내용	57
〈표 4-4〉 「수산업법 시행령」 허가·신고제도 주요내용	59
〈표 4-5〉 「수산업법 시행규칙」 허가·신고제도 주요내용	60
〈표 4-6〉 일본 「어업법」 내수면어업 관련 규정	69
〈표 5-1〉 지방자치법	78
〈표 5-2〉 내수면어업법 허가·신고제도 개선 과제	80
〈표 5-3〉 수산업법상 허가 신청 시	81
〈표 5-4〉 어업허가 신청 조항 개정안	82
〈표 5-5〉 「수산업법」상 허가 개수 제한	82
〈표 5-6〉 어업허가 개수 제한	83
〈표 5-7〉 「수산업법」상 신고어업 거주조건, 조업일수 준수 의무, 정지 및 효력상실 조항	84
〈표 5-8〉 신고어업 거주 기간 및 준수 조건 추가 개정(안)	85
〈표 5-9〉 「수산업법」상 허가 지위 승계 조항	86
〈표 5-10〉 지위 승계 조항 신설(안)	88
〈표 5-11〉 지위 승계 신고서 신설(안)	89
〈표 5-12〉 「수산업법」상 허가·신고어업의 변경·폐업 신고 조항	90
〈표 5-13〉 허가 및 신고의 변경·폐업 조항 신설(안)	91
〈표 5-14〉 허가대장 기록·관리 조항 신설(안)	92
〈표 5-15〉 내수면어업 허가대장 신설(안)	93
〈표 5-16〉 내수면어업 허가대장 신설(안) (계속)	94
〈표 5-17〉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 개정(안)	95
〈표 5-18〉 내수면어업 신고서 개정(안)	96
〈표 6-1〉 내수면어업법 허가·신고제도 개선 과제	98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흐름도	6
〈그림 4-1〉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허가·신고제도 비교	64
〈그림 4-2〉 「내수면어업법」 체계상 규정되지 않은 허가·신고 규정	65
〈그림 4-3〉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법령체계상 허가·신고 관련 조항 비교	66
〈그림 4-4〉 플로리다주 내수면어업 관리·운영규정	70
〈그림 5-1〉 허가·신고제도 개선의 판단 기준	76

정책제안

■ 「내수면어업법」 허가·신고제도 개정(안) 제안

1) 허가 신청 시 주소지 조건

- 현행 「내수면어업법」 규정상 허가 신청 시 신고 주체의 주소지 조건이 부재하여 타 지역 주민의 허가 신청 사례가 다수 발생, 이에 따른 지방자치권 및 현장실무의 혼란, 민원 발생 등 문제개선을 위한 개정안 제안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을 내수면어업 허가 신청인의 주소지는 신청서 제출 특별자치도·시·군·구의 행정구역 내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

2) 허가 개수 제한 신설

- 「내수면어업법」 규정상 허가 개수에 대한 제한이 없는 상황으로, 수산자원관리 측면에서 「수산업법」을 준용하여 허가 개수를 세 개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안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같은 어선 또는 어구로 두 종류 이상의 어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어선 또는 어구로 세 종류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 적절한 허가 개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내수면 수산자원에 대한 자원 평가와 종합적 관리 계획의 수립 선행 필요, 지역민의 생계 보장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복수 허가 발급 고려

3) 신고어업 거주조건, 조업일수 준수 의무, 효력 상실 규정 신설

- 내수면 신고어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6개월 이상 거주한 실거주자로 제한하고, 연 60일 조업일수 준수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시 신고의 효력이 정지 또는 상실되도록 개정안 제안
- 「내수면어업법」 제11조 제1항에 신고어업자의 조건으로 관할 지자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하고, 제6항 제1호에 연간 60일 이상의 조업준수 요건, 제2호에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조정 준수 의무 신설, 제7항에 제6항의 준수 의무를 위반할 시 제한 및 정지 규정, 제8항에 제7항에 따른 제한정지처분 2회 이상 위반 시 신고 효력 상실 규정을 신설

4) 허가 지위 승계 규정 신설

- 「내수면어업법」 규정상 지위 승계에 관한 조항 부재, 이에 따른 지자체별 실무행정의 혼선 방지를 위해 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설안 제안
- 「내수면어업법」 신설 조항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내용을 총 5개 항으로 구성하고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상 지위 승계 신고서 양식을 신설 제안

5) 허가·신고어업의 변경 및 폐업 신고 규정 신설

- 「내수면어업법」 규정상 허가 및 신고한 사항에 관한 변동 및 폐업이 발생할 경우 관련 절차 및 조치에 관한 규정 부재하여, 허가 및 신고의 변경·폐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제안
- 「내수면어업법」상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폐업 등에 관한 조항 및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에 어업의 변경허가 및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폐업신고에 관한 조항 신설

6) 허가대장 관련 법적 근거 신설

- 「내수면어업법」 법률 체계상 허가대장 기록 관리에 관한 법률근거 부재로
현행 행정 체계상 전산 시스템 없이 담당자가 별도로 수기대장 작성 관리,
이로 인한 오타 및 누락 등의 문제 발생에 대응 필요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신설조항을 어업허가대장의 기록·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허가대장 양식을 신설하여 제안

7) 허가·신고 처리 일수 조정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상 허가·신고 업무 처리 일수가 5일로 규정,
그러나 「내수면어업법」 상 수면관리자와의 협의 기간이 14일로 규정하여
처리 일수의 차이 발생, 법률 해석상 명확화를 위한 조정안 제시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서 명시한 처리 기간을 5일
로 규정하되, 수면관리자 협의 기간은 산업에서 제외하는 문구 삽입
- 「내수면어업법」에서 명시한 수면관리자와의 14일의 협의 기간 및 수자원
공사, 지역환경청 등 다양한 협의 기관과의 검토 과정과 소요 시간이 수반
되는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조정안 제안

요 약

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 순 · 박찬엽 · 김기완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배경) 내수면어업을 관리·규정하는 「내수면어업법」상 타 법률의 준용 규정, 허가어업 등 관련 분야 세부규정 미비로 법률 해석상의 모호성 발생 및 허가제도의 지자체별 독자적 운영에 따른 행정 운영상 통일성 미흡
 - 「내수면어업법」은 제22조에 따른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준용 규정에 따라 지자체별 법률해석이 상이하고, 어업허가에 관한 세부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어업인 및 지자체 담당자 등 이해관계자 업무 혼선
 - 세부적으로 어업허가와 관련된 특정사항(소재지, 동일어선·어구별 허가 가능 수), 어업신고 기준(소재지 및 신고 준수조건), 허가 연장 절차 및 어업허가·신고 변경 사항에 관한 조항 미비
 - 이에 따라, 내수면 어업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지자체 내 및 지자체 간 업무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행정상 착오 발생 및 통일성 저해 우려

-
- (목적) 내수면어업의 효율적 수산자원 관리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관련 법률인 「내수면어업법」 허가 및 신고제도에 관한 조항과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등 검토를 통한 개선 방안 도출
 - 현 「내수면어업법」 법률 체계상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허가·신고제도 부문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안) 마련 및 법률적 개선 방안 도출
 - 내수면어업의 허가·신고제도의 연혁과 변천과정을 검토하고, 실무자·전문가로 구성된 정책협의회를 실시하여 현안 발굴 및 점검을 통해 내수면어업 제도운영에 관한 기초자료 확보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제1장) 내수면어업과 「내수면어업법」의 범위를 설명하고,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도 개선의 배경과 필요성 설명
- (제2장) 「내수면어업법」의 허가·신고제도 적용업종에 해당하는 내수면어로어업의 생산량, 생산금액, 어가, 허가·신고 등 현황을 개괄하여 내수면어로어업의 특성과 역할 제시
- (제3장) 「내수면어업법」 및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도의 입법취지와 개정연혁, 주요조항 등 법체계 분석을 통한 법률 및 세부 제도를 검토하고, 지자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제도의 운영 현황 분석

- (제4장)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도의 모태가 되는 「수산업법」의 규정과 「내수면어업법」의 분화 연혁을 고찰하고, 양 법률 간 허가·신고제도의 비교분석 및 일본, 미국의 내수면어업 관련 규정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현행 「내수면어업법」상 운영규정의 한계점과 시사점 도출
- (제5장) 제1장에서 제4장에서 분석된 주요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 설정, 동 원칙에 입각한 제도 개선 과제 도출,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2) 연구 방법

- (문헌조사)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의 관련 조항과 연혁 등 법률 전반에 대한 문헌 검토 및 양 법률 간 차이점 및 미비점 도출
- (설문조사)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업무를 이행하는 시·군·구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운영상 문제점과 민원사례 발굴
- (사례조사) 일본 「어업법」 및 미국 주별(플로리다, 미시시피) 내수면어업 관련 규정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정책협의)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실무 담당자, 법률, 수산 등 전문가 연계 개정(안)도출 및 실효성과 적합성 검토 추진

3.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 개선 과제 도출

- 「내수면어업법」본 연구에서 내수면어업법 법률 분석, 수산업법과의 비교 검토, 문헌조사, 수산분야 법률 전문가 자문, 지자체 담당자 설문

조사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수면 어업법 허가·신고제도 관련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함.

- 허가 신청 시 주소지 조건 추가, 허가 개수 제한, 신고어업 주소지 조건 추가, 신고어업 조업일수 준수 조건 추가, 신고 효력 상실 조항 신설, 허가 지위 승계, 변경, 폐업 조항 신설, 허가 대장 관리, 허가, 신고 처리기간, 신고어업 신고 처리 기간 등 12가지 개선 과제를 도출함.
- 이와 함께, 도출된 허가·신고제도 개선 과제들에 대해 현장 실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짚어본 후 구체적인 법률 조문의 개정(안)을 제안하였음.

4. 결론 및 요약

- 「내수면어업법」은 2019년 8월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라 내수면 양식업 부분의 규정이 이관되면서, 내수면 어로어업만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전문화된 기능 요구
- 그 간 「내수면어업법」에 근거한 정책은 내수면 양식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 향후에는 본 법률이 적용되는 내수면 어로 어업에 중점을 두고 관련 실태조사와 지자체와 연계한 정책 수립과 이행이 중요
- 또한, 본 연구가 내수면 어로어업 행정 실무의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 앞으로는 내수면 수산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과학적 수산자원 평가와 자원관리계획과 같은 산업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연구가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실무적으로 내수면어업 수계를 관리하고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와 연계한 정책계획 수립 등의 병행 필요

EXECUTIVE SUMMARY

A Study on Amendments to the Legal System for Inland Fishing Permits and Reporting

CHOI SOON · Park Chan-Yeop · Kim ki-wan

1.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Ambiguitie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Inland Fisheries Act arise stem from the lack of detailed regulations in areas such as cross-application of other laws, licensed fisheries, and related areas governing inland fisheries, leading to inconsistency in administrative practices across local governments.
- The Inland Fisheries Act incorporates provisions from the Fisheries Act and the Fishery Resource Management Act (Article 22). However, inconsistencies in interpretation by local governments, combined with the absence of comprehensive guidelines for fishery licensing, have created confusion among stakeholders, including fishers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
- Specifically, the lack of clarity affects issues related to fishery licensing (such as location requirements, the number of permits per vessel or gear type), criteria for fishery notifications (location and compliance conditions), procedures for license renewal, and changes to fishery permits and notifications.
 - Consequently, the operation of the inland fishery system risks administrative errors and inconsistency in practices both within and between local governments.
 - (Purpose) To propose improvements to the licensing and notification systems in the Inland Fisheries Act for efficient inland fishery resource management and improved management systems.
 - This study focuses on drafting relevant regulations and legal improvements, especially for the licensing and notification systems, which currently lack clear standards within the legal framework of the Inland Fisheries Act.
 - By reviewing the history and evolution of the inland fishery licensing and notification system and conducting a policy council with practitioners and expert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current issues and compile foundational data essential for effective operation of the inland fishery system.

2. Study Content and Methodology

1) Study Content

- Chapter 1 explains the scope of inland fisheries and the Inland Fisheries Act and discusses the background and necessity for improving the inland fisheries licensing and notification system.
- Chapter 2 provides an overview of production volume, production value, fishery households, licenses, and notifications for inland capture fisheries under the Inland Fisheries Act, illustrating the characteristics and role of inland capture fisheries.
- Chapter 3 analyzes the legal framework and specific provisions, including the legislative intent, amendment history, and key provisions of the Inland Fisheries Act and its licensing and notification systems. A survey of local government practitioner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current operational status of the inland fisheries licensing and notification systems.
- Chapter 4 examin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Fisheries Act, which serves as the foundation for the inland fisheries licensing and notification system, and the evolution of the Inland Fisheries Act.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icensing and notification systems in both laws, as along with similar regulations in Japan and the U.S., this

chapter identifies limitations and insights for the current operational regulations in the Inland Fisheries Act.

- Chapter 5 summarizes the key findings from Chapters 1 to 4 to establish fundamental principles for improving the inland fisheries licensing and notification systems. Based on these principles, the study proposes key improvement tasks and presents measures for amending relevant regulations.

2) Methodology

- (Literature Study) Conduct a literature review on relevant provisions and history of the Inland Fisheries Act and Fisheries Act, examining overall legal aspects,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aws, and identifying any gaps.
- (Survey Study) Identify operational issues and examples of public complaints through a survey targeting local governments (cities, counties, districts)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permits and reporting for inland fisheries.
- (Case Study) Analyze regulations related to inland fisheries in Japan's Fisheries Act and in selected U.S. states (Florida, Mississippi) to draw relevant insights.
- (Policy Consultation) Collaborate with working-level officials from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local governments, legal experts, and fisheries specialists to develop amendment

proposals and assess effectiveness and suitability.

3. Proposed Amendment to the Inland Fisheries Act Permit and Reporting System

1) Permit Application Address Requirement

- Currently, there is no requirement regarding the applicant's address for permits under the Inland Fisheries Act, leading to frequent applications by residents from other regions. This has led to confusion in local administrative processes, challenges in field operations, and an increase in public complaints.
- The proposed amendment suggests that Article 7(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land Fisheries Act be revised to specify that permit applicants' addresses must be within the administrative area of the special autonomous province, city, county, or district where the application is submitted.

2) Introduction of Permit Quota Limit

- At present, the Inland Fisheries Act does not impose a limit on the number of permits issued. To manage fishery resources, it is proposed to introduce a regulation, similar to the Fisheries Act, limiting the number of permits to three.

-
- Article 7(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land Fisheries Act would be amended to state that individuals seeking to engage in more than one type of fishery with the same vessel or equipment may apply for up to three permits.
 - Prior to setting an appropriate permit limit, a resource assessment and comprehensive management plan for inland fisheries resources should be conducted, with consideration given to issuing multiple permits only when aligned with local livelihood objectives.

3) Residency Requirement, Operation Days, and Effectiveness Provisions for Reported Fisheries

-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reported inland fisheries, it is proposed to limit eligibility to those who have lived in the area for over six months, impose an obligation to operate for at least 60 days per year, and suspend or revoke the permit if this requirement is not met.
- Article 11(1) of the Inland Fisheries Act would restrict reported fisheries applicants to those residing in the jurisdiction for at least six months, while Article 11(6)(1) would establish an annual requirement of at least 60 operation days. A clause to protect fishery resources and comply with fishing adjustments would be added, and Article 11(7) would stipulate restrictions and suspension for non-compliance, with Article 11(8) leading to the revocation of the report's effectiveness after more than two

violations.

4) New Regulation for Permit Status Transfer

- Currently, the Inland Fisheries Act lacks provisions for the transfer of permit status, causing administrative confusion across local governments. To address this, a new amendment proposes establishing permit status transfer provisions.
- A new section under the Inland Fisheries Act would contain five clauses related to the transfer of permit status, and a permit transfer report form would be introduced in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Inland Fisheries Act.

5) New Regulations for Permit and Reporting Changes and Closure Notification

- The Inland Fisheries Act currently lacks provisions for handling changes or closures related to permits and reports. To address this, an amendment is proposed to add clauses for permit/report modifications and closures.
- New clauses in the Inland Fisheries Act and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Inland Fisheries Act would cover changes in permit conditions and closures for both permitted and reported fisheries.

6) Legal Basis for Permit Ledger

- The current administrative system lacks a legal basis for maintaining a permit ledger under the Inland Fisheries Act, which currently relies on manual record-keeping prone to errors and omissions.
- The amendment proposes a new section in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Inland Fisheries Act for managing permit records, along with an updated permit ledger template.

7) Adjustment of Permit and Reporting Processing Days

-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Inland Fisheries Act currently stipulate a five-day processing period for permit/report matters. However, Inland Fisheries Act mandates a 14-day consultation period with the water manager, leading to discrepancies. To clarify, the amendment proposes adjusting the processing period.
- Form No. 4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Inland Fisheries Act would specify a five-day processing period, excluding the consultation period with the water manager.
- Considering realistic conditions for consultations with various entities like th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nd local environmental offices, this amendment seeks to harmonize processing timelines.

4. Policy recommendations

- Following the transfer of inland aquaculture regulations to the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in August 2019, the *Inland Fisheries Act* now functions as a specialized regulatory framework solely governing inland capture fisheries. Now it needs a focused legal approach to inland capture fisheries.
- Past policies under the Inland Fisheries Act have focused mainly on inland aquaculture. Moving forward, it is crucial to emphasize inland capture fisheries within this law, conducting relevant surveys and establishing policies in collabo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 Additionally, while this study focuses on addressing the administrative shortcomings of inland capture fisheries, future studies should prioritize developing a foundation for industry growth, such as comprehensive surveys of inland fishery resources, scientific resource assessments, and resource management plans. Establishing policy plans in coordination with local governments responsible for managing inland fisheries and handling administrative tasks should also be pursued.

01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을 말하며, 여기서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민물이나 기수의 물 흐름 또는 수면”이라고 내수면어업법상에 정의되어 있다.¹⁾ 내수면어업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는 한 공공용 수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²⁾ 내수면어업은 내수면양식과 내수면어로어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9년 8월 「양식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내수면양식 관련 조항이 분리되어 나감에 따라, 현행 「내수면어업법」은 내수면 어로어업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³⁾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내수면어업법」은 내수면 어로어업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내수면 어로어업의 생산량은 2023년 기준 7,800톤으로 전체 어업 생산량 367만8천 톤의 0.2%밖에 되지 않고, 연근해어업 95만6천 톤과 비교해도 0.8% 수준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⁴⁾ 내수면어업 내에서도 양식과

1) 내수면어업법 제2조

2) 내수면어업법 제3조

3) 신용민(2020), p.4.

4)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검색일: 2024.7.19.)

어로의 비중에 차이가 있는데, 2023년 생산액 기준으로 내수면 양식이 87%, 내수면 어로는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로어업이 양식업보다 비중이 훨씬 작다. 이렇듯 생산 비중은 미미하지만, 내수면 어로어업은 붕어, 잉어, 메기 등 바다에서 생산되지 않는 민물 생선과 다슬기 등의 패류를 국민에게 공급하여 다양한 먹거리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특화 수산물을 생산하여 지역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내수면 어로어업은 「내수면어업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수산자원보호령 등의 제도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데, 관리 범위 및 내용, 소관 부처 등에 따라 다양한 법률에 의해 복잡하게 규정받고 있다. 내수면어업법, 공유수면매립법, 습지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하천법, 문화재보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0여 개 법령이 적용된다. 또한, 관리주체 역시 다양하여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환경 부서 등이 수면관리자로 지정되어있다.

내수면 어로어업은 제도적으로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각각에 대해 어업 종류가 세분화된다. 본 연구의 범위인 내수면 허가어업에는 자망, 종묘 채포, 연승, 패류 채취, 낚시업, 낚장망, 각망이 있으며, 신고어업은 투망, 어살, 통발, 외줄낚시, 육상양식, 관상어 양식을 포함한다.

2019년 「양식산업발전법」 분법 이후, 「내수면어업법」의 적용 범위가 협소해지고, 22조에 의거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준용하여 운영함에 따라 법 해석이 모호하며, 지자체별로 다른 법 해석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내수면 어업 허가와 관련한 세부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지자체마다 독자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업무 수행에 애

로가 발생하고 있다. 어업허가와 관련된 세부 사항(소재지 및 동일 어선·어구별 허가 가능 수), 어업신고 기준(소재지 및 신고 준수조건(조업일수 등)) 등의 규정이 미비하며, 허가 연장 절차 및 어업허가·신고 변경 사항 관련한 조항도 미비하다. 명확한 규정과 서식이 미비하다 보니, 같은 지자체라도 담당자마다 매번 업무 처리 방식이 달라 행정의 통일성이 저해되며, 담당자 교체 시 업무의 연속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와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내수면어업의 효율적 수산자원관리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내수면 어업허가·신고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내수면어업법상 규정의 미비로 인해 지자체별로 독자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절차 및 관련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내수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허가·신고 관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내수면어업법상 어업 허가·신고 절차 및 관련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효율적 내수면어업 자원관리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허가·신고 관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내수면어업과 내수면어업법의 범위를 설명하고,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도 개선의 배경과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내수면어업과 허가·신고제도 관련 선행연구를 설명하고, 본 연구의 차별성을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내수면어로어업의 생산량, 생산금액, 어가 수, 허가 건수 등 생산 현황을 개괄하고, 내수면 어로어업의 특성과 역할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내수면어업법의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을 살펴보고, 주요 조항을 개괄하여 내수면어로어업을 규정하고 있는 법체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내수면어업법 상 허가·신고제도 조항을 분석하고, 허가 신청 조항의 개정 연혁을 살펴본 후 허가어업 지위 승계, 허가·신고어업의 연장 및 변경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수산업법상의 근해, 연안, 구획어업의 허가·신고제도를 개괄하고 내수면어업법상의 허가·신고제도와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일본과 미국 등 주요국의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도 운영 방식을 조사하였다.

제5장에서는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허가·신고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 원칙을 설정하고, 동 원칙에 입각하여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개선 과제들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주소지조건 신설, 신고 시 조업일수 기준 추가 방안, 지위 승계 조항, 변경 폐업신고 절차의 신설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결론과 정책 제언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내수면어업법과 수산업법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내수면어업법 허가·신고제도 상의 차이점과 미비점을 분석하였다. 이후 시·군·구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법령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민원 사례를 수집하였다. 이후 수산 분야 법률 전문가 자문을 통해 허가·신고 관련 조항의 개선(안)을 1차 도출하였다. 이후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실무담당자, 전문가들과 함께 허가·신고제도 1차 개선(안)의 실효성과 적합성을 검토하고 최종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표 1-1〉 정책협의회 개요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도 개선 방안 정책협의회



○일시: 2024.9.26.(목) 13:00

○장소: 오송역 오송컨퍼런스센터 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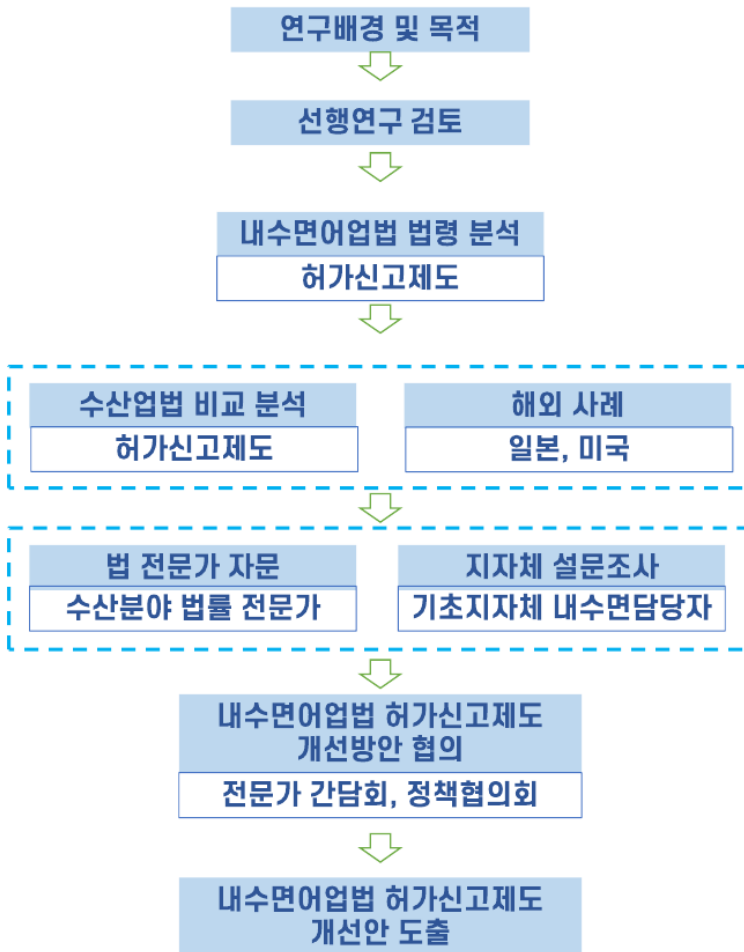
○참석자

- KMI(2명): 최순 전문연구원, 김기완 연구원
- 실무자(4명): 안종관 해양수산부 내수면팀장, 임상욱 연구관, 남정희 주무관, 정다영 대전 서구청 주무관
- 전문가(2명): 신용민 부경대학교 교수,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료: 저자 작성

본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그림 1-1〉 연구 흐름도



자료: 저자 작성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김대영(2008)은 내수면어업 현황 분석과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내수면 수산자원의 지속적 감소, 체계적 자원관리 시스템 미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동일한 수계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원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김대영·이정삼(2007)은 바다에서 생산되지 않는 수산물을 공급하여 국민 식생활의 다양성을 증대시키고, 지역 어민의 소득원으로 기능하는 내수면어로어업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동시에 관할 지자체, 소관 부서 등이 복잡하게 참여하여 다양한 법률로 규정 받고 있어 내수면어업 관련 조정이 어려움을 설명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수계별 내수면어로어업의 특징을 표로 정리하였는데, 주요 하천과 상류 하류를 구분하여 주요 어종과 진행 사업 등을 일목요연하게 표시하였다. 신용민(2013)은 연안어업 어업허가의 거래 실태를 연구하였는데, 어업 허가의 법적 성격이 일반적 금지를 해지함으로써 얻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권리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어업허가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였고 행정서류인 어업허가증, 어선원부 등 어업공부를 문헌조사 방식으로 조사하여 어업허가와 어선거래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윤광진 외(2011)에서는 수산업법상 어업허가 우선순위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어업허가 신청자 수가 허가 정수를 초과하여 어업허가에 대해 경쟁할 경우를 대비해 법률 조항에 미리 우선순위 기준을 정해놓는 것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AHP 분석을 통해 요소별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젊은 신규 인력의 유입보다는 경험 있는 기존 어업인에게 더 높은 우선순위가 부여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순태(2016)는 수산 관련 법률의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수산업법과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과의 차이를 분석하면서, 수산유통업이 수산업법상의 수산업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고, 해수면 어로어업과 내수면어로어업을 통합

하여 어업법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해면어업에 비해 규모나 생산량이 매우 미미하여 그동안 정책적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고, 심층적인 연구가 미진했던 내수면어로업을 연구 대상으로 하며, 특히, 양식산업발전법 분법 이후 법의 공백상태가 커진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도에 대해 분야 전문가와 지자체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표 1-2〉 선행연구 검토

구 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 요 선 행 연구	1 -과제명: 우리나라 내수면어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자(년도): 김대영(2008) -연구 목적: 내수면어업 현황 분석과 경쟁력 강화 방안 도출	-문헌조사 -자료조사 -사례조사	- 내수면어업 문제점 분석 수면관리자, 권리금 현황 분석 내수면어업 경쟁력 강화 방안 도출
	2 -과제명: 내수면 어로어업의 동향과 재편과제에 관한 연구 -연구자(년도): 김대영·이정삼(2007) -연구 목적: 내수면 어로어업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안	-문헌조사 -자료조사 -현장조사	- 수계별 내수면 어로어업 특징 정리 - 내수면어업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3 -과제명: 연안어업 어업허가 거래 실태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연구 -연구자(년도): 신용민(2013) -연구 목적: 연안어업 어업허가 거래 현황 분석을 통한 거래 투명성 제고 방안 제안	-문헌조사 -자료조사	- 지자체 어업공부(어업 관련 행정서류) 분석 어업허가증, 허가대장, 어선원부 분석 거래비용이론 적용한 경제학적 분석 어선거래소 설립 등 중장기 대책 제안
	4 -과제명: 수산업법 개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연구자(년도): 차철표(2005) -연구 목적: 수산업법 개정 및 양식산업발전법 분법 필요성 제시	-문헌조사 -자료조사	- 수산업법 연혁 정리 - 수산 관련 법령 정비 및 개정 필요성 제시

구 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5	-과제명: 내수면 양식산업 정책 및 활성화 방안 -연구자(년도): 이명준(2018) -연구 목적: 내수면 양식산업 활성화 방안 제언	-문헌조사 -자료조사 -실태조사 -사례조사	- 연도별 내수면어업 정책 흐름 정리 내수면 어업 4대 전략, 12대 중점과제 제시
6	-과제명: 어업허가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입법평가 -연구자(년도): 윤광진 외(2011) -연구 목적: 어업허가 우선순위 설정 방식 개선 방안 제시	-문헌조사 -자료조사 -사례조사	- 어업허가 우선순위에 관한 설문조사 - AHP를 통한 우선순위 도출 중요도 인식과 우선순위 비교 분석
7	-과제명: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연구자(년도): 이광남(2010) -연구 목적: 어업허가 일제정비 방안 제시	-문헌조사 -사례분석 -경제성 분석 -비용편익 분석	- 일본 사례분석 시나리오별 CVM 경제성 분석 비용/편익분석(순현재가치법)
8	-과제명: 수산 관련 법령 개편에 관한 연구 -연구자(년도): 이순태(2016) -연구 목적: 수산 관련 법령 개편 연혁 정리 및 시사점 도출	-문헌조사 -자료조사 -사례조사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 비교 분석 양식산업발전법 분법 필요성 제시
본 연구	-기존의 연구는 연근해어업의 허가·신고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	-내수면어로어업의 허가·신고 제도 현황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는 미흡한 실정	-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절차 및 관련 정책 현황 -내수면어업인과 전문가 의견 조사 -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제도 미비점 분석 -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제도 개선 방안

자료: 저자 작성

02

내수면어로어업 동향

제1절 생산 동향

본 장에서는 내수면어로어업의 생산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어업별·어법별 생산 동향을 통해 내수면어업의 생산 규모를 파악하고, 어가 수 및 어가인구, 면허·허가·신고 현황 그리고 어선 세력을 통해 내수면어로어업의 생산 현황을 살펴본다.

1. 생산 규모

1) 어업별 생산 동향

2023년 기준 전체 수산물 생산량에서 해면양식어업은 평균 61.7%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연근해어업 26%, 원양어업 11.2% 순서였다. 내수면어업은 2023년 기준 전체 수산물 생산량에서 1.2%였고, 내수면어로어업은 0.2%로 다른 업종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내수면어업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3.7%로 해면양식어업(5.9%) 다음으로

높았다. 2010년 내수면어업 생산량은 30,982톤으로 2020년을 제외하고 증가세를 보였으며 2022년 48,777톤까지 늘었으나 2023년에 붕어, 잉어, 빙어 등 내수면 대표 어종의 생산이 줄면서 전년에 비해 12.1% 감소한 42,879톤이었다.

내수면어업은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글에서 다루는 내수면어로어업 생산량을 살펴보면, 2010년 10,256톤으로 1만여 톤을 상회한 이후 최근 10년간 1만 톤을 넘기지 못했다. 2023년 어로어업 생산량은 전년 대비 16.2% 감소한 7,825톤이었으며, 이는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0.2%를 차지했다.

〈표 2-1〉 연도별·어업별 생산량

단위: 톤

구분	합계	내수면	어로	연근해	해면양식	원양
2010년	3,110,634	30,982	10,256	1,132,536	1,355,000	592,116
2015년	3,337,383	33,055	9,133	1,058,319	1,667,872	578,137
2016년	3,269,432	35,400	9,103	907,580	1,872,400	454,053
2017년	3,724,711	36,270	7,887	926,941	2,315,775	445,726
2018년	3,770,057	35,326	7,393	1,011,536	2,249,605	473,589
2019년	3,860,969	35,282	7,696	911,852	2,410,040	503,795
2020년	3,712,873	33,968	8,226	933,880	2,308,407	436,617
2021년	3,832,171	42,672	8,670	942,875	2,401,120	445,505
2022년	3,610,461	48,777	9,339	888,694	2,273,631	399,359
2023년	3,678,417	42,879	7,825	955,955	2,269,357	410,226
평균	3,590,711	37,461	8,553	967,017	2,112,321	473,912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검색일: 2024.7.19.)

생산금액으로는 2023년 기준 연근해어업이 전체 수산물 생산금액의 47%로 가장 높았으며, 해면양식어업 33.8%, 원양어업 11.8% 순이었다.

내수면어업은 전체 수산물 생산금액의 7.4%를 차지했으나, 최근 10년간 연평균 8.3% 증가하며 가장 높았다. 그러나 2023년 내수면어업 생산금액은 6,8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에 그쳤다.

내수면어업의 어로어업 생산금액은 2010년 673억 원에서 최근 10년간 증감을 반복했다. 2023년 생산금액은 5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 상승했으며, 전체 수산물 생산금액의 0.7%를 차지했다.

〈표 2-2〉 연도별·어업별 생산금액

단위: 백만 원

구분	합계	내수면		연근해	해면양식	원양
			어로			
2010년	7,425,686	333,834	67,312	3,911,681	1,815,646	1,364,524
2015년	7,257,465	407,482	66,288	3,702,306	2,123,938	1,023,738
2016년	7,476,747	417,547	59,284	3,635,893	2,345,544	1,077,763
2017년	8,566,871	458,497	60,233	4,014,056	2,960,015	1,134,303
2018년	8,608,418	460,982	52,242	4,136,066	2,880,673	1,130,697
2019년	8,366,328	484,785	58,601	3,957,149	2,805,298	1,119,096
2020년	8,832,971	444,832	58,363	4,371,757	2,895,227	1,121,155
2021년	9,281,652	520,599	60,371	4,150,427	3,255,896	1,354,730
2022년	9,249,381	694,062	54,799	4,043,007	3,386,618	1,125,694
2023년	9,288,361	684,636	58,510	4,367,256	3,137,860	1,098,609
평균	8,435,388	490,726	59,600	4,028,960	2,760,672	1,155,031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검색일: 2024.7.19.)

내수면어업에서 어로어업은 전체 수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나, 지역별 하천, 호수, 댐 등에 서식하는 다양한 수산자원을 바탕으로 식생활 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지역 경제를 유지하고 활성화시키는 등 지역의 소득원으로써의 역할에도 기여한 만큼 내수면 어로어업 산업 규모만으로 가볍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2) 어법별 생산 동향

내수면어업 어법별로, 어로어업은 하천, 호수, 댐 등 수계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반면, 양식어업은 어업활동을 개인 사유수면에서 하는 차이가 있다. 어로어업 생산량은 2010년 이후 감소해 왔으나 2020년부터 점차 증가해 2022년에 9천 톤을 넘겼다. 2023년에는 7,825톤으로 감소하면서 내수면어업 생산량에서 어로어업이 18.2%를 차지하며 가장 낮은 비중을 기록했다. 어로어업 생산량은 갑각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부류가 감소하면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3.0% 감소했다. 반면, 양식어업 생산량은 2010년 이후 증감을 반복했으나 2021년에 3만여 톤을 넘겼고, 2023년에는 3만 5,054톤이 생산되었다. 양식어업 생산량은 패류, 어류 생산이 늘면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6.0% 증가했다.

〈표 2-3〉 연도별·어법별 생산량

단위: 톤, %

구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어로	10,256 (33.1)	9,133 (27.6)	9,103 (25.7)	7,887 (21.7)	7,393 (20.9)	7,696 (21.8)	8,226 (24.2)	8,670 (20.3)	9,339 (19.1)	7,825 (18.2)
양식	20,726	23,922	26,297	28,383	27,934	27,586	25,742	34,002	39,438	35,054
합계	30,982	33,055	35,400	36,270	35,326	35,282	33,968	42,672	48,777	42,879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검색일: 2024.7.19.)

내수면어업의 품종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먼저 어로어업의 어류는 21개 품종(2023년)으로 전체 어로어업 생산량의 80% 내외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품종으로는 붕어가 최근 10년간 가장 많이 생산되었다. 다음으로 잉어, 송어류, 빙어, 블루길 등이었다. 어류는 2023년에 품종별 생산량 상위 10개 중 절반 이상이 전년에 비해 감소했는데, 대표적으로 붕어 생산량이 전년 대비 39.0% 감소한 1,872톤이었다. 이는 소비 부진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어업활동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잉어, 빙어, 메기, 등

자개류 등도 역시 낮은 수익성과 고령화로 인한 경영난의 이유로 생산 규모가 축소되었다. 반면, 패류의 경우 2개 품종(2023년)으로 다슬기류 생산이 늘면서 전년 대비 24.8% 증가한 1,234톤이었다. 갑각류의 경우도 두 개 품종(2023년)으로 게류, 새우류 등의 생산이 늘면서 전년 대비 75.5% 증가한 344톤이었다.

양식어업의 품종별 생산량은 어류는 28개 품종(2023년)으로 최근 10년간 뱀장어 생산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송어류, 메기, 향어 등 순이었다. 뱀장어의 경우 2023년 기준 1만 6,045톤이 생산되며 전년 대비 11.5% 감소했으나 최근 10년간 연평균 8.2% 증가하며 가장 높았다. 반면 메기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5.9% 감소했다. 패류의 경우 세 개 품종(2023년)으로 우렁이, 재첩, 다슬기류 등이 있다. 우렁이의 경우 최근 10년간 연평균 17.0% 증가한 반면 다슬기류는 29.4% 감소했다. 갑각류는 세 개 품종(2023년)으로 새우류 생산이 증가했으나 게류 등이 감소하면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1.2% 감소했다.

〈표 2-4〉 내수면어업 품종별 생산량 추이

단위: 톤

구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30,982	33,055	35,400	36,270	35,326	35,282	33,968	42,672	48,777	42,879	
어로	소계	10,256	9,133	9,103	7,887	7,393	7,696	8,226	8,670	9,339	7,825
	어류	8,430	6,565	6,982	6,167	5,800	5,941	7,019	7,652	8,152	6,247
	붕어	2,655	1,906	1,654	1,536	1,761	1,850	2,301	2,728	3,069	1,872
	잉어	1,802	1,205	1,296	937	857	1,065	1,238	1,451	1,778	853
	송어	933	777	485	441	511	399	293	583	741	757
	빙어	253	250	303	781	257	144	328	372	407	278
	메기	88	150	353	167	115	153	118	185	147	109
	동자개	263	284	268	227	244	244	252	274	262	101
	기타	2,436	1,991	2,620	2,078	2,054	2,086	2,489	2,060	1,747	2,279
	패류	1,510	2,130	1,880	1,523	1,369	1,358	937	786	989	1,234
	다슬기	667	708	424	571	741	945	728	551	523	801
	기타	843	1,422	1,456	951	628	413	209	235	466	433
	갑각류	316	436	239	194	217	389	266	226	196	344
	기타생물	0	2	1	3	6	8	4	5	2	0
양식	소계	20,726	23,922	26,297	28,383	27,934	27,586	25,742	34,002	39,438	35,054
	어류	17,886	19,671	21,287	23,441	21,841	21,868	19,574	25,854	29,005	24,841
	뱀장어	7,902	9,009	9,836	11,095	10,530	10,885	9,724	15,686	18,131	16,045
	송어	2,652	3,064	3,066	3,358	3,128	3,285	2,414	2,479	3,043	2,757
	메기	4,194	4,116	4,599	5,163	4,731	4,116	3,833	3,598	3,762	2,419
	항어	1,169	1,419	1,724	1,658	1,579	1,523	1,678	2,028	1,847	1,727
	마두리치	700	849	800	816	663	628	680	671	684	661
	기타	1,279	1,213	1,261	1,351	1,207	1,431	1,247	1,391	1,538	1,231
	패류	2,575	4,038	4,793	4,762	5,899	5,553	6,095	8,080	10,346	10,125
	우렁이	2,458	3,997	4,759	4,707	5,847	5,469	6,073	8,055	10,305	10,085
	재첩	94	35	32	52	52	84	21	23	41	39
	다슬기	23	6	2	3	1	0	0	2	1	1
	갑각류	29	38	26	26	40	20	20	24	22	26
	기타	226	175	191	154	154	145	54	44	63	62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검색일: 2024.7.19.)

3) 지역별 생산 동향

내수면 어로어업의 지역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경기, 경남, 충북, 충남, 경북 등의 순이었다. 경기도는 2016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가장 생산이 많았다. 2023년 기준 경기도의 생산량은 2,742톤으로, 어류 중에서 송어류(744톤), 붕어(481톤), 잉어(267톤) 등 생산이 많았다. 또한 다슬기류 등 패류 생산량의 22.5%가 경기도에서 생산되었다. 그 다음으로 경남지역 생산량은 2023년 기준 1,683톤으로 최근 10년 연평균 3.2% 증가했다. 대표어종은 붕어(373톤), 재첩(278톤), 잉어(255톤)로 세 품목의 총생산량이 경남지역 전체 생산량의 53.8%를 차지했다.

〈표 2-5〉 어로어업 지역별 생산량

단위: 톤

구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경기	2,844	2,375	1,859	1,701	1,751	1,772	1,514	1,837	2,218	2,742
경남	1,269	2,140	1,985	1,684	1,731	1,543	1,177	1,214	1,397	1,683
충북	1,362	698	622	748	788	698	1,090	802	523	969
충남	1,239	959	963	510	898	1,347	1,933	2,623	2,948	786
경북	290	662	889	1,084	237	404	253	263	239	540
부산	616	877	544	447	408	521	530	473	582	407
강원	921	470	933	1,397	706	621	847	613	511	395
전남	1,548	810	1,214	256	649	534	743	690	804	206
전북	163	121	47	30	174	226	115	134	91	72
세종	-	9	29	22	34	15	7	7	10	10
대구	4	12	16	9	14	13	14	11	11	9
대전	-	-	-	-	-	1	2	4	4	5
울산	-	-	0	0	1	0	2	0	1	0
합계	10,256	9,133	9,103	7,887	7,393	7,696	8,226	8,670	9,339	7,825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 동향조사(검색일: 2024.7.19.)

2. 조업 규모

1) 어가 수 및 어가인구

내수면어업 어가인구는 2005년에 1만 1천여 명에서 매년 감소해 2023년에 5,387명으로 20년여 만에 절반 정도로 줄었다. 이 중 내수면어업의 어로어업 가구수도 매해 감소했는데, 2021년에 증가하긴 했으나 2023년에 다시 줄면서 1,631가구였다. 양식어업 가구수는 최근 10년간 증감을 반복했으나 2021년 1,000가구 아래로 내려간 이후 2023년에는 696가수로 가장 적었다. 양식어업 가구수가 크게 줄면서 내수면어업에서 어로어업 가구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2023년에 내수면어업 가구수의 70.1%를 차지했다.

〈표 2-6〉 내수면어업 어가인구 및 어가 수

단위: 명, 가구수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어가인구	11,689	10,848	8,403	6,920	6,907	6,622	7,170	6,064	5,576	5,387
어가 수	3,740	3,659	3,112	2,809	2,765	2,725	2,872	2,601	2,470	2,327
어로어업	2,380	2,164	1,907	1,739	1,688	1,686	1,680	1,697	1,731	1,631
양식어업	1,360	1,495	1,205	1,070	1,077	1,039	1,192	904	739	696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2) 면허·허가·신고 현황

내수면어업(어로, 양식)의 면허, 허가, 신고 건수를 정리하면 〈표2-7〉과 같다. 전체 합계로는 2011년에 8,949건으로 매년 증가해 왔으며, 2023년에 1만 1,252건을 기록했다. 전체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면허, 신고 건수가 감소한 반면 허가 건수가 2021년부터 증가했기 때문이다.

〈표 2-7〉 내수면어업 면허·허가·신고 현황

단위: 건수

구분	2011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면허	61	61	59	50	55	52	48	53	52	44
허가	4,983	4,578	4,782	4,777	5,007	5,191	4,951	7,987	7,970	8,008
신고	3,905	5,087	5,144	5,229	5,445	5,477	6,120	3,200	3,218	3,200
합계	8,949	9,726	9,985	10,056	10,507	10,720	11,119	11,240	11,240	11,252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3) 지역별 면허·허가·신고 현황

면허어업은 정치망어업, 공동어업을 하려는 어업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등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2023년 기준 면허어업은 정치망어업 3건, 공동어업 32건이었으며 붕어, 잉어 등 생산이 많은 충남지역이 공동어업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허가어업은 자망, 종묘채포, 연승, 패류채취, 낭장망, 각망어업을 하려는 어업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3년 기준 허가어업은 자망어업 1,981건, 패류채취어업 1,230건, 각망어업 869건 등이었다. 자망어업의 경우 송어, 붕어, 잉어 생산이 많은 경기도가 4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지역도 358건에 달했다. 패류채취어업은 재첩 등 패류 생산이 많은 전남지역이 4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각망어업은 민물고기 생산이 많은 충북지역이 171건이었다. 마지막 신고어업은 면허어업과 허가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어업에는 투망, 어살, 통발, 외줄낚시, 자망, 패류채취, 각망어업 등이 있지만 통발어업이 2,157건으로 가장 많으며, 지역별로는 경남지역이 1,339건으로 전체 통발어업의 62.1%를 차지했다. 투망어업도 경남지역이 671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어로어업 생산량이 두 번

째로 많은 경남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어로어업이 행해지기 때문이다.

〈표 2-8〉 어로어업 면허·허가·신고 현황(2023년)

단위: 건수

구분	계	경기	부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기타
면허	35	6	0	0	0	21	2	2	1	3	0
정치망	3	0	0	0	0	1	2	0	0	0	0
공동	32	6	0	0	0	20	0	2	1	3	0
허가	5,294	1,196	516	503	407	315	186	801	290	844	236
자망	1,981	421	227	195	155	105	88	257	146	358	29
종묘채포	435	178	0	0	0	43	1	11	2	1	199
연승	709	165	139	73	5	47	4	51	11	212	2
패류채취	1,230	216	150	78	75	17	80	413	8	193	0
낭장망	70	46	0	0	1	1	0	16	1	5	0
각망	869	170	0	157	171	102	13	53	122	75	6
신고	3,200	270	248	66	254	40	25	76	138	2,066	17
투망	907	7	0	0	78	6	20	43	81	671	1
어살	3	0	0	0	0	3	0	0	0	0	0
통발	2,157	207	248	64	163	30	5	29	56	1,339	16
외줄낚시	119	56	0	2	2	1	0	1	1	56	0
자망	6	0	0	0	6	0	0	0	0	0	0
패류채취	4	0	0	0	1	0	0	3	0	0	0
각망	4	0	0	0	4	0	0	0	0	0	0
합계	8,529	1,472	764	569	661	376	213	879	429	2,913	253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4) 어선세력

내수면 어로어업의 생산수단인 어선세력 추이는 <표2-9>와 같다. 2010년 5,946척에서 증감을 반복했으나 대체로 감소하면서 2022년에 2,943척이 되었다. 내수면 어선은 동력선과 무동력선⁵⁾으로 구분되며, 동력선의 척수는 2010년에 5,326척에서 5년 만에 2,777척으로 크게 감소한 이후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무동력선도 2010년 620척에서 2015년 324척으로 감소하였는데, 이후에도 줄면서 2022년에 232척이 되었다. 척당 톤 수로는 동력선과 무동력선 모두 안정적으로 보이나, 동력선의 척당 마력이 2010년 0.7마력에서 2015년 1.47마력으로 높아졌고 이는 2022년까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표 2-9> 연도별 어선세력 추이

단위: 척, 톤, 백 마력

구분	척수 합계	동력					무동력		
		척수	톤수	마력수	척당 톤수	척당 마력	척수	톤수	척당 톤수
2010년	5,946	5,326	4,120	3,718	0.77	0.70	620	179	0.29
2015년	3,101	2,777	1,938	1,887	0.70	1.47	324	84	0.26
2016년	3,091	2,765	1,925	1,894	0.70	1.46	326	78	0.24
2017년	3,012	2,699	1,855	1,838	0.69	1.47	313	76	0.24
2018년	3,009	2,702	1,835	1,855	0.68	1.46	307	79	0.26
2019년	3,067	2,774	1,889	1,914	0.68	1.45	293	78	0.26
2020년	3,081	2,786	1,925	1,925	0.69	1.45	295	76	0.26
2021년	3,001	2,735	1,977	1,936	0.72	1.41	266	69	0.26
2022년	2,943	2,711	1,966	1,934	0.73	1.40	232	60	0.26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등록어선통계 (검색일: 2024.7.19.)

5) 내수면 어선은 어선규모도 1톤 미만인 소규모가 대부분으로 해면어업의 어선과 달리 어구를 인망하는 등 직접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양망이나 투망 등과 같이 생산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됨(김대영 외, 2007, p.44)

제2절 내수면어로어업의 특성

내수면 어로어업은 수계별로 어업활동이 이뤄지면서 수계별·지역별로 어종이나 어법이 상이하다. 또한 연근해어업이나 양식업에 비해 내수면어업의 생산 규모가 작다 보니 그동안 정책적인 면에서 중요한 어업으로 인식되지 못했던 면도 있다.⁶⁾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 8월 「양식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내수면 양식어업 관련 사항이 분법되어 분리됨에 따라, 「내수면어업법」은 내수면 어로어업 관련 규정만 남게 되었다. 이에 내수면 어로어업은 수계별, 지역별, 어종별, 어법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법, 제도가 모호한 실정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내수면 어로어업의 특성 및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규정이나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내수면어업의 수계별 특징은 동일한 수계라도 다양한 형태의 어업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수계를 담당하는 행정력이 지역에 걸쳐 있다 보니 소관 부처나 지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강의 위치별 특징을 살펴보면, 강의 상류에서는 겸업 비율이 높았고, 잉어, 붕어뿐만 아니라 동자개, 메기 등을 어획하였다. 반면, 강의 중·하류지역에서는 전업 비율이 높았으며, 상류와 유사하게 잉어, 붕어 어획도 많지만 기수대 어종 어획이 많았다.⁷⁾ 어업인의 종사 형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겸업이었고, 어업인들은 수확한 어획물을 직접 건강원, 식당 등에 판매하거나 수집상에게 판매한다.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지자체의 행정력이 미약하고 타 부서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동일한 수계에 있는 지자체들은 수계 전체를 대상으로 종묘 방류, 인허가, 규제 수단 등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나 자원관리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6)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에 따르면 내수면어로어업의 생산량은 전체 수산업의 0.2%에 불과하다.

7) 김대영(2008), p.123

지자체 간의 동일한 행정력을 행사하도록 내수면 어로어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든 수계에서 공통적으로 유어 낚시객과 마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전히 외래어종이 많아 내수면어업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있다.⁸⁾

〈표 2-10〉 수계별 내수면어업의 특징

	상류	중·하류
	• 겸업(농업, 요식업) 비율 높음 • 어업인허가 추가에 부정적 • 잉어, 붕어 + 동자개, 메기 등	• 전업 비율이 높음 • 어업인허가 정수 설치 요망 • 잉어, 붕어 + 기수대 어종
5대강 및 대청호, 남양호	• 면허 : 강의 본류보다 지류 혹은 저수지 양식이 많음, 일부 공동어업권 • 허가 : 자망, 패류채취, 각망, 연승 순으로 많음 • 신고 : 통발, 투망 등 •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업보다 겸업 비율이 높음, 유희인허가 존재 • 어획물은 직접 판매(건강원, 식당) 또는 상인 판매 • 행정력 미약, 타 부서와 비협조, 낚시객과 갈등, 불법어업 多 • 자원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음, 지자체별로 종묘방류 증가 • 무분별한 방류(종교행사) 및 외래어종 증가로 생태계 교란	

자료: 김대영(2008),pp.123-128. 중 일부 요약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내수면어업은 연근해어업, 해면양식어업 등에 비해 생산 규모가 작으나 하천, 호수, 댐 등에 서식하는 수산자원을 바탕으로 수계별·지역별로 다양한 어업활동을 통해 지역 소득원 역할을 해왔다. 본 절에서는 내수면 어로어업의 동향 및 특성을 살펴보고, 내수면 어로어업의 필요한 규정이나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8) 김대영(2008),pp.123-128.

먼저, 내수면 어로어업의 지역별 생산량은 2023년 기준 경기도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남, 충북, 충남 순이었다. 경기도는 송어류, 붕어, 잉어 순으로 생산이 많았고, 경남지역은 붕어, 재첩, 잉어 생산이 많았다. 다음으로 내수면어업의 면허, 허가,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해 2023년 기준 총 1만 1,252건이었다. 전체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면허, 신고 건수가 감소한 반면 허가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어로어업의 면허 건수는 총 35건으로 충남지역이 공동어업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허가 건수는 총 5,294건으로 자망, 패류채취, 각망어업 순으로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송어, 붕어 등 생산이 많은 경기도가 1,196건으로 많았다. 경남지역도 자망, 연승, 패류채취어업 건수가 많아 두 번째로 많은 총 844건이었다. 신고 건수는 3,200건으로 대부분 통발어업이었고, 다양한 어로어업이 행해지는 경남지역의 신고 건수가 2,066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⁹⁾

두 번째로 내수면 어로어업의 특성으로는 수계별로 어업활동이 이뤄져 수계별·지역별로 어종이나 어법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강의 상류에는 겸업 비율이 높았고, 잉어, 붕어뿐만 아니라 동자개, 메기 등을 어획했다. 반면 강 중·하류에는 전업 비율이 높았고, 잉어, 붕어를 포함해 기수대 어종 어획이 많았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자체의 행정력이 미약하고, 동일한 수계에 있는 지자체들은 수계 전체를 대상으로 종묘 방류, 인허가, 규제 수단 등의 업무를 하지만 지자체 간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¹⁰⁾ 뿐만 아니라 동일한 수계를 대상으로 여러 지자체가 있다 보니 어종, 어업에 대한 규제나 제도가 모호한 상황이다. 이에 지자체 간의 동일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한편, 내수면 어로어가의 어가 소득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3.7% 증가에 그쳤다. 내수면 어로어업의 활성화화를 위해서는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9)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참고

10) 김대영(2008), pp.123-128

03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도 현황

제1절 내수면어업법의 입법 취지와 특징

1. 입법 취지와 연혁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내수면어업법의 입법 취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내수면어업법」의 성립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당초 내수면어업에 관한 사항은 1953년 제정된 수산업법상의 내수면어업 관련 조항들을 통해 규정되고 있었다. 이후 1975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수산업법상에 있던 내수면어업 관련 조항들이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으로 분리되어 나갔다.¹¹⁾ 당시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은 유희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내수면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관련 법규가 규제하고 있어 복잡한 수면 관리 체제를 정비하고 내수면을 식량 공급처로 개발하여 지역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다.¹²⁾

11)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 간 관계에 대해 대법원은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은 서로 적용되는 수면 자체가 구분되는 것이어서 일반법, 특별법의 관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17564 판결)

12)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법률 제2835호, 1975. 12. 31., 제정] 제정이유 : “유희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이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은 내수면 개발 촉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2000년 내수면어업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전부개정은 내수면 개발지역 지정 및 내수면 개발 의무 등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어업의 면허·허가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어업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어업인의 편익을 도모하는 등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로 보여진다. 또한, 법에서는 1조에서 법의 목적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째, 내수면의 종합적 이용·관리, 둘째, 수산자원 보호 육성, 셋째,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이다. 이러한 개정 이유 및 법의 목적을 살펴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권한 강화를 통한 지역 특성에 맞는 내수면 수산자원 관리와 육성이 주된 입법 취지이자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1〉 내수면어업법 개정 이유

내수면어업법 [법률 제6255호, 2000. 1. 28., 전부개정] ◇개정 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내수면개발지역 지정 및 내수면개발 의무 등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u>어업의 면허·허가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어업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어업인의 편익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u>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검색일: 2024.8.14.)

내수면의 적극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여러가지 관련법규가 규제하고 있는 현재의 다원적인 수면관리체제를 정비하고 획기적인 개발촉진에 상응하는 어업제도와 개발정책수행에 따른 지원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내수면을 광의의 식량공급권으로 개발하고 농어민소득을 증대시키려는 것임.”

2. 제22조 수산업법 준용 규정

내수면어업법의 특징 중의 하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점이다.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는 이 법에서 미처 규정하지 못해 법의 공백상태에 있는 영역에 대해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을 준용한다고 되어있다. 이때, “준용”이란 특정 법령을 그것과 비슷하지만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말한다.¹³⁾

〈표 3-2〉 준용 조항

제22조(「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자료: 내수면어업법 제22조

이 준용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주제인 어업허가 시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준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2023년 12월 법제처에서 법령해석을 내린 바가 있는데, 수산업법상의 어업허가와 내수면어업의 허가는 그 분류와 체계가 상이하다는 점, 그리고, 준용은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라고 명시하여 내수면어업법이 규정하지 못한 법의 공백 부분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인데, 내수면어업법은 어업허가에 대해 나름대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법의 공백 상태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준용 대상으로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허가 신청 시 선적항 관할 조건을 내수면어업법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¹⁴⁾

13) 법제처(검색일: 2024.8.10.)

14) 법제처(검색일: 2024.8.13.)

〈표 3-3〉내수면어업허가의 준용여부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23-1026, 2023. 12. 27.】

어선으로 조업하는 내수면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의 선적항이 해당 내수면 관할행정구역 내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신청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의 기준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이유】

「수산업법」에서는 허가어업을 어선의 동력(動力), 총톤수, 수역의 구획 등을 기준으로 근해어업(제40조제1항), 연안어업(제2항), 구획어업(제3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내수면어업법」에서는 허가어업을 사용하는 어구(漁具) 등을 기준으로 자망어업(제9조제1항제1호), 종묘채포어업(제2호), 연승어업(제3호), 패류채취어업(제4호), 낭장망어업(제6호), 각망어업(제7호)의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바, 「수산업법」상 허가어업과 「내수면어업법」상 허가어업은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어업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분류 기준 및 체계가 상이함**.

더욱이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서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의 종류(제1항), 허가 시 고려할 사항(제2항), 어업 규모와 방법(제3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허가 신청 방법 및 절차, 관련 서식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제7조) 및 시행규칙(제6조 및 별지 제4호서식)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내수면어업법령에서는 내수면어업 허가의 요건과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선적항에 관한 사항을 허가 신청 단계에서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없는바, 이 사항에 대해 수산업법령의 관련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내수면어업법령의 내용 및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료: 법제처(검색일: 2024.8.14.)

제2절 내수면어업법 허가·신고제도 현황

1. 어업허가와 신고

「내수면어업법」(이하 “법”) 및 관련 하위법령상의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관련 조항은 아래 표와 같다. 법에서 어업허가와 신고어업에 한정된 조항만을 살펴보면, 어업허가는 제9조(허가어업)와 제10조(우선순위), 신고어업은 제11조(신고어업)이 있고, 추가로 25조 벌칙조항에서도 허가 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에서는 제7조(어업허가의 신청), 제8조(허가어업의 제한 승인), 제9조(신고어업)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에서는 제6조(어업허가신청서), 제6조의2(패류 채취용 어구), 제7조(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 제9조(어업의 신고)가 있음. 기타 해양수산부 고시로 「패류채취어업 중 잠수기 사용지역 및 패류의 종류」가 있다.

〈표 3-4〉 「내수면어업법」 및 관련 하위법령 상 어업허가·어업신고 관련 규정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고시 등
제9조 허가어업	제7조 어업허가의 신청 - 수면관할 지자체	제6조 어업허가 신청서	
제10조 우선순위	제8조 허가어업의 제한 승인	제6조의2 패류 채취용 어구	패류채취어업 중 잠수기 사용지역 및 패류의 종류
		제7조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	
제11조 신고어업 - 5일 이내 결과 통보	제9조 신고어업	제9조 어업의 신고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고시 등
제12조 수면 이용의 협약	제10조 수면이용의 협약		
제13조 어업의 유효기간 - 면허, 허가, 신고 유효기간은 5년	제11조 어업면허 등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제14조 조업구역의 조정 - 조업구역이 둘 이상 의 지자체에 걸쳐있을 경우 협의한다.			
제16조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등	제12조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등	제15조 공익을 위한 어 업 제한 등의 결정기준	

자료: 저자 작성

내수면에서 가능한 어업허가 대상은 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자
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까지
총 여섯 종이며, 내수면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별
표 3에서 규정하고 있다.¹⁵⁾

내수면에서 이들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행령에 따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¹⁶⁾ 어업허가 시 내수면의 용도, 자원상태, 경영 및 이용에 관한 상황
을 고려하여야 하며,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의 승인을 받아 허가어업의 조업 구역, 규모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다.¹⁷⁾

15) 내수면어업법 제9조,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표3

16) 내수면어업법 제9조 제1항

17) 내수면어업법 제9조 제2항, 제4항

〈표 3-5〉 내수면어업법 허가어업 규정

〈내수면어업법〉	
제9조(허가어업)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자망어업(刺網漁業):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종묘채포어업(種苗採捕漁業):	양식하기 위하여 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포획·채취하는 어업
3. 연승어업(延繩漁業):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패류채취어업: 형망(桁網)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어업	
5. 삭제	
6. 낭장망어업(囊長網漁業):	낭장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각망어업(角網漁業):	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어업을 허가할 때에는 내수면의 용도, 자원상태, 경영 및 이용에 관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업의 규모와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허가어업의 조업 구역, 규모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자료: 내수면어업법 제9조

어업허가의 신청은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어업허가 신청에 있어 조업 대상 어선이나 어구에 대해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¹⁸⁾

18)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7조

〈표 3-6〉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어업허가신청 규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7조(어업허가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으로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선에 대하여,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구에 대하여 각각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를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어업의 제한 승인) ①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한하려는 사유
2.	제한하려는 어업의 종류·명칭 및 내용
3.	제한하려는 조업구역(도면 첨부)
4.	제한하려는 어업의 규모·방법
5.	제한하려는 수산동식물의 자원 상태
6.	다른 어업과의 관계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허가어업의 조업 구역·규모 및 방법 등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자료: 내수면어업법 제7조, 제8조

시행령 제8조에서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 승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표 3-7〉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어업허가신청서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6조(어업허가신청서) ①	영 제7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해야 한다.
1.	삭제
2.	수면의 위치도 1부(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

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의2(패류 채취용 어구)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란 다음 각호의 어구를 말한다.

1. 손틀방류(틀에 손잡이를 달아 사람이 직접 잡고 바닥을 긁어 조개류 등을 채취하는 도구류)
2. 잠수기(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 및 패류 채취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기수(汽水)지역: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및 패류

나. 담수(淡水)지역: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를 말한다)로 정하는 지역 및 패류

제7조(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자료: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6조

법 제10조에서는 허가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①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어업계(內水面漁業契), 내수면과 관련된 법인 및 단체, ②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③ 내수면 어업개발 및 수산물 수출에 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의 순으로 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¹⁹⁾

그러나 지역 어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가의 우선순위를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 ①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에서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②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의 어장 관리 및 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 등은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 내수면어업법 제10조

〈표 3-8〉 내수면어업법 어업면허와 허가 우선순위 조항

〈내수면어업법〉

제10조(우선순위)

- ①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및 허가는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어업계(內水面漁業契), 내수면과 관련된 법인 및 단체
 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내수면 어업개발 및 수산물 수출에 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어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9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우선순위를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설치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에서 이 법 또는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의 어장 관리 및 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제7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
-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는 내수면어업인의 대표와 내수면 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도수산조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운영 중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자료: 내수면어업법 제10조

내수면에서의 신고어업 관련 규정은 법 제11조(신고어업), 시행령 제9조(신고어업), 시행규칙 제9조(어업의 신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내수면에서 법 제6조(면허어업) 및 제9조(허가어업) 이외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어

업 즉, 신고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²⁰⁾

〈표 3-9〉 내수면어업 신고어업 관련 조항

〈내수면어업법〉 제11조(신고어업) ① 내수면에서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유수면에서 제6조제1항 각호, 제9조제1항 각호 또는 제1항에 따른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구역의 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신고어업)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망어업: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어살어업: 하천에 어살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통발어업: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외줄낚시어업: 외줄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삭제 6. 삭제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내수면어업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업: 신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	---

20) 내수면어업법 제11조

군수 · 구청장 2. 법 제11조제2항의 어업: 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③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9조(어업의 신고)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자료: 법제처(검색일: 2024.8.10.)

내수면에서의 신고어업 대상은 ① 투망어업, ② 어살어업, ③ 통발어업, ④ 외줄낚시어업이며, 사유수면에서는 이들 외에 내수면어업 허가 대상도 모두 신고어업 대상이다.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내수면어업신고서를 어업허가 신청서와 동일하게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고 대상 어업에 따라 신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구분하고 있다.²¹⁾

21)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2. 내수면어업법상 허가·신고 관련 조항 개정 연혁

내수면어업법상 허가·신고 관련 조항에 있어 주요한 개정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정 당시, 허가·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은 3년이었으나, 1999년 어업인의 편의를 위해 5년으로 연장하였다. 둘째, 2000년 내수면어업법으로 법의 이름을 바꾸면서, 허가권자를 광역지자체인 시도 지사에서 기초지자체인 시·군·구청장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어업관리를 목적으로 하였다. 셋째, 2010년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허가어업 우선순위를 각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것이었다. 넷째, 2017년 신고어업 처리 일수를 5일로 단축시켰다.²²⁾

이러한 개정 연혁을 종합해 보면, 내수면어업법은 각 시군구 단위 기초지자체의 독립적 권한을 강화해 주면서 지방자치권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신고 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어업인의 편의 증대 또한 입법 취지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표 3-10〉 어업허가 관련 내수면어업법 개정 연혁

번호	개정일	신/구	내 용
1	내수면어업개발 촉진법 [법률 제2835호, 1975. 12. 31., 제정]	신	제8조 (허가어업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 또는 채포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자망어업, 2. 투망어업, 3. 종묘채포어업, 4. 주낙어업, 5. 어전어업, 6. 패류채취어업, 7. 낚시업
		이유	◇ 제정 이유 - 유희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내수면의 적극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관련 법규가 규제하고 있는 현재의 다원적인 수면관리체제를 정비하고 획기적인 개발촉진에 상응하는 어업제도와 개발정책수행에 따른 지원체제를 확립함

22) 법제처(검색일: 2024.8.10.)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번호	개정일	신/구	내 용
			로써 내수면을 광의의 식량공급권으로 개발하고 농어민소득을 증대시키려는 것임. ⑤내수면어업을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으로 분류함. ⑥어업의 유효기간을 면허어업은 5년 내지 10년, 허가어업·신고어업은 3년 이내로 하고,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 ⑨이 법에 의한 면허·허가어업은 하천법·공유수면관리법 등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
2	내수면어업개발 촉진법 [법률 제5920호, 1999. 2. 8, 일부개정]	구	제8조(허가어업 등) ① (생 략)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어업조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이외의 어업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어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어업의 유효기간) ①제7조제1항제1호의 면허어업은 10년, 동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면허어업은 5년, 제8조의 허가어업 및 제9조의 신고어업은 3년 이내를 각각 그 유효기간으로 한다.
		신	제8조(허가어업 등)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어업조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이외의 어업에 대하여 허가어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어업의 유효기간) ①제7조제1항제1호의 면허어업은 10년, 동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면허어업, 제8조의 허가어업 및 제9조의 신고어업은 5년 이내를 각각 그 유효기간으로 한다.
		이유	-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낮은 내수면개발심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 내수면어업의 허가 및 신고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어업인의 편익을 도모.
3	내수면어업법 [법률 제6255호, 2000. 1. 28, 전부개정]	구	제8조(허가어업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 또는 채포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	제9조(허가어업) ①내수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내수면개발 지역 지정 및 내수면개발 의무 등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어업의 면허·허가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어업관

번호	개정일	신/구	내 용
			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어업인의 편익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내수면의 개발촉진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법의 제명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서 내수면어업법으로 변경함(법 제명)
4	내수면어업법 [시행 2005. 10. 1.] [법률 제7477호, 2005. 3. 31, 일부 개정]		제9조 (허가어업)
			제9조 (허가어업)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규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31>
			◇ 개정 이유 - 하천의 물 흐름을 차단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수면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어도(魚道)를 설치하여 회유성(回游性) 어류의 이동통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낚시 등 유어행위(遊漁行爲)에 대한 제한 등 유어질서 확립 관련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도록 함. ◇ 개정문 - 제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규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	[법률 제10293호, 2010. 5. 17, 일부개정]	구	제9조(허가어업) 5. 낚시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터를 경영하는 업(業)
		신	제9조(허가어업) <삭제>
		이유	낚시업은, 별도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분법.
6	[법률 제9626호, 2009. 4. 22, 타법개정]	구	제22조(수산업법의 준용)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신	제22조(「수산업법」 등의 준용)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유	준용 법률에 수산자원관리법 추가
7	내수면어업법 [법률 제10293호, 2010. 5. 17, 일부개정]	구	제11조(신고어업) ②사유수면에서 제6조제1항 각호·제9조제1항 각호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번호	개정일	신/구	내 용
		신	제11조(신고어업) ② 사유수면에서 제6조제1항 각호, 제9조제1항 각호 또는 제1항에 따른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유	사유수면에서의 내수면어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임의적 신고제를 의무적 신고제로 전환
8	내수면어업법 [법률 제10293호, 2010. 5. 17, 일부개정]	구	제10조(우선순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제10조(우선순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어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9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우선순위를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유	허가어업 우선순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하여 부령에서 정하고 있던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제한 기준 등에 대한 조례제정 근거를 법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내수면 어종 포획·채취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9	내수면어업법 [법률 제14727호, 2017. 3. 21, 일부개정]	구	제11조(신고어업)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구역 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특별자치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	제11조(신고어업)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유	내수면 어업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자료: 법제처(검색일: 2024.8.10.)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음으로, 허가 관련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주요한 개정 내용으로 2010년 허가 신청 관청을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조업 수면 관할 지자체로 변경한 것과, 낚시업이 분법되면서, 낚시 관련 내용이 삭제된 것을 들 수 있다.

〈표 3-11〉 허가 관련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 연혁

번호	개정일	신/구	내 용
1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333호, 2010. 8. 11, 일부개정]	구	제7조(어업허가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으로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선에 대하여,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구에 대하여, 낚시업의 경우에는 일정한 수면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각각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신	제7조(어업허가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으로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선에 대하여,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구에 대하여, 낚시업의 경우에는 일정한 수면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각각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를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1> [전문개정 2010.6.8]
		이유	내수면에서의 자망어업, 낚시업 등에 대한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어업허가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허가대상 어업은 해당 수면에 일정한 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고, 허가 시 해당 수면관리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허가관청을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려는 것임.

번호	개정일	신/구	내 용
2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24097호, 2012. 9. 7, 타법개정]	구	제7조(어업허가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으로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선에 대하여,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구에 대하여, 낚시업의 경우에는 일정한 수면에 대하여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각각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를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1>
		신	제7조(어업허가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으로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선에 대하여,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구에 대하여 각각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를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1>
		이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정으로 낚시업 관련 내용 삭제

자료 : 법제처(검색일: 2024.8.10.)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 중 주목해야 할 점은 2010년 8월 개정된 어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지자체에 관한 내용이다. 2010.8.11. 개정이 되면서, 아래와 같이 허가 관청이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 관할 지자체”로 개정이 되었고, 그 이유로는 시설 설치 등에 있어 수면관리자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허가 관청을 신청인의 주소지가 아닌 수면 관할 지자체로 변경한다고 되어있다.²³⁾ 이 개정으로 인해 현재 내수면 어로어업의 허가에는 허가 신청자의 주소지 조건이 없어지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에 따라 타 시군구 주민이 다른 지역 지자체에 내수면어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A시 주민이 B시에 위치한 내수면 하천에 자망어업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제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다른 지

23) 법제처(검색일: 2024.8.10.)

역에 가서 내수면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은 본 연구의 핵심 쟁점이 되는 부분이므로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표 3-12〉 허가 관할 지자체 변경 개정 내용

대통령령 제223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시행령 (개정 전)	대통령령 제22333호로 일부 개정된 시행령 <2010.8.11. 개정 후>
제7조(어업허가 신청)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어업허가 신청)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를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이유〉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러한 허가 대상 어업은 해당 수면에 일정한 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고, 허가 시 해당 수면관리자와의 협力が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허가 관청을 **수면 관할 지자체로 변경**하고자 함.

자료: 법제처(검색일: 2024.8.10.)

신고 관련 시행령의 개정은 주로 신고의 대상 업종이 축소되는 건에 대해 이루어졌다. 2016년 관상어육성법 제정에 따라, 내수면어업 신고 대상에서 관상어양식업이 제외되었고, 2016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으로 신고 대상인 육상양식업에서 종묘 생산 부분이 삭제되었다. 이후 2020년 양식산업발전법의 제정으로 육상양식업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다.²⁴⁾

〈표 3-13〉 신고 관련 시행령 개정 연혁

번호	개정일	신/구	내 용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25171호,	구	제9조(신고어업)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망어업, 2. 어살어업, 3. 통발어업, 4. 외줄낚시어업, 5. 육상양식어업,

24) 법제처(검색일: 2024.8.10.)

번호	개정일	신/구	내 용
	2014. 2. 11, 타법개정]		6. 관상어양식어업: 실내에서 일정한 시설(수조의 수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설치하여 관상어를 양식하거나 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신	제9조(신고어업)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망어업, 2. 어살어업, 3. 통발어업, 4. 외줄낚시어업, 5. 육상양식어업, 6. <삭제>
		이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관상어양식업 분리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27245호, 2016. 6. 21, 타법개정]	구	제9조(신고어업)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5. 육상양식어업: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종묘(種苗)를 생산하는 어업
		신	제9조(신고어업)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6.21> 5. 육상양식어업: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이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에 따라 종자 생산업 분리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0977호, 2020. 8. 26, 타법개정]	구	제9조(신고어업)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6.21> 5. 육상양식어업: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신	제9조(신고어업)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6.21> 5. 삭제 <2020.8.26>
		이유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으로 육상양식업 제외

자료: 법제처(검색일: 2024.8.10.)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3-14〉 내수면어업허가 신청서 및 처리절차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신청서 작성	접 수
	확 인
	기안·결재
	허 가 증 발 급
통 보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4. 22.>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
(자연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랑망어업 및 각망어업용)

※ 책상면 어도용 낚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제과기간 (5일)
------	------	-----------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어업의 종류	
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어구의 규모	(m, 폭, 톤, 기타)
조업구역	일원

사용어선	선명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전수 연월일
포획·채취물의 종류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부터 까지 (년간)

「내수면어업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내수면어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정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자료: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내수면어업신청서)

제3절 지자체별 내수면 허가·신고제도 운영 현황

본 연구에서는 전국 시군구 기초지자체 내수면어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도 운영 현황 관련하여, 2024년 7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문항은 허가어업 신청 시 주소지 조건 미비로 인한 문제점, 지역민으로 허가 대상 제한에 대한 의견, 어업허가 지위 승계 처리 방식, 허가 사항 변경 업무 처리 방식, 허가 정수 설정 여부, 내수면어업 관련 규정 및 서식 미비로 인한 어려움, 기타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표 3-15〉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도 운영 관련 지자체 설문조사 문항

번호	설문 문항
(Q1-1)	내수면어업에 신청자 주소지 조건이 없어서 실무 상 문제점,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Q1-2)	내수면어업(양식 제외) 관련 허가 신청자의 주소지가 위치한 관할 지자체에만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즉, 지역 주민에게만 내수면어업 허가를 발급)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2)	내수면어업(양식 제외) 관련 매매 또는 상속으로 인한 지위 승계를 실무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사용하시는 서식이나 기준이 있다면 답신에 첨부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Q3)	내수면어업(양식 제외) 관련 허가 사항 변경 신고와 관련 현장에서는 어떻게 실무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까? 자체 서식이나 기준이 있다면 첨부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Q4)	내수면어업(양식 제외) 허가 및 신고 관련 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허가 정수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십니까? 설정하였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언제 설정하였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정하였다면 어업별 허가 정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Q5)	내수면어업(양식 제외) 허가 신고 제도 관련, 신청 서식(별지)이나 기준(별표)이 미비하여 현장 실무에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떠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Q6)	위에서 말씀해 주신 문제점들에 대해 현장 실무를 진행하시면서 생각하셨던 개선 방안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저자 작성

그중 회신이 온 40개 지자체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먼저 어업허가 신청 시 주소지 조건 미비로 인해 타 지역 주민의 신청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장기간 민원으로까지 이어져 현장 혼란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부분의 경우 타 지역 주민의 허가 신청에 대해 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하였다. 지역 주민으로 어업 허가를 제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한 명을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 내수면 담당자가 찬성하였다. 그 근거로는 내수면어로업 특성상 원거리에

서 조업할 수 없어 다른 지역 주민에게 어업 허가 발급 시 실제적인 조업 가능성이 낮으며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한 조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어선과 어구 보관 관련 주민과의 분쟁 가능성, 일몰 이후 조업 관련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다는 점, 기존 내수면어로어업 지역 주민들의 생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 지역 어업인과의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신규 어업허가에 대한 경쟁이 심한 경우 지자체는 지역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 특정 인기 많은 내수면의 경우 허가가 집중되어 수산자원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었다. 반면 한 개 지자체에서는 귀어·귀촌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이전 시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신중히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매매, 임대, 상속으로 인한 어업허가의 지위 승계권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기존 허가 폐업 처리 후 신규 허가를 발생하는 곳도 있었고, 어선법 서식을 사용하는 지자체가 있었다. 지방행정시스템인 새울 시스템에서도 내수면어업의 지위 승계 관련 처리 기능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 사항 변경 업무도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다. 신청서를 다시 받아 재신청을 받는 지자체가 있었고, 어선법 서식을 사용하는 곳, 수산업법 서식을 사용하는 곳 등 제각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허가 정수 역시 일부 지자체는 내부 공문을 통해 허가 정수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었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허가 정수를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면어업 관련 규정과 서식의 미비로 인한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에 맞는 서식이 새울행정시스템에 없어서 새로운 코드를 신설하여 접수한다는 응답이 있었고, 허가 대상이 어구인지 어선인지 모호하여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다수 내수면어업 실무 담당자가 지적한 문제는 허가·신고의 행정 처리 기간이 짧다는 점이었다. 허가의 경우 현재 어업허가신청서에는 처리 기간이 5일이라고 처리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²⁵⁾ 또 신고의 경우 내수면어업법 제11조(신고어업) 3항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²⁶⁾²⁷⁾ 이와 같이 허가·신고의 행정처리 기간이 5일이라고 규정된 반면, 내수면 어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에 따르면 수면 관리자가 14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고 되어있다. 즉, 현행 허가·신고 처리 기간인 5일 내에는 수면 이용 협의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며, 관계 부서 의견 취합 후 허가 부서 검토 및 결정, 수면 이용 협의까지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개선 방안에 대한 문항에서는 수면 관리자와의 협의 조항이 실무상에서 실효성이 부족하고 형식적이어서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경 허가, 변경 신고, 폐업 등의 행정 처리를 위한 조항과 서식이 시급히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호성이 높은 준용 규정을 폐지하고, 모든 사항에 조항과 서식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3-16〉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도 운영 관련 지자체 설문조사 결과

질문 / 답변
(Q1-1) 주소지 조건 미비로 인한 문제점
(A구) 내수면어업법의 허가 상세 기준 미비로 인해 현재 타 지자체 거주 민원인으로부터 약 6개월 간 지속적으로 정보공개 청구, 국민신문고, 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민원을 접

25)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4호

26) 내수면어업법 제11조 (신고어업)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7) 법률상 신고어업 처리기간이 “5일”로 명시됨에도 불구하고, 신고서 서식에는 처리 기간이 “1일”로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단순 오기로 판단되며 법률과 일치하도록 신고어업 신고서 서식의 수정이 필요하다.

수 및 처리하고 있음.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2항에 의거 불허하였으나, 상세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납득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 중임

(B시) 타 지자체의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관내 위치한 하천 일부 구역에서 내수면어업법상 신고어업 등을 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음

(C시) 주민등록 주소지는 서울시이나 C시에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하여 허가를 내준바 있으며, 주소지와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 장소와 거리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없어 허가 통보한 바 있음

(D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어업허가 구역과 다를 경우 종사자를 빙자한 타인지배에 의한 어업행위 우려가 매우 높음. 원거리에서 이동하며 어업이 불가한 구조이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에 한하여 허가함이 타당함

(E군) 작년 타 지역 주민이 인근 여러 개 지자체에 중복으로 자망 어업허가를 신청한 사례가 있음. 1차적으로 신청을 반려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결국 허가함

(Q1-2) 지역 주민으로 허가 대상 제한에 대한 의견

(A군) 지역민으로 제한해야 함. 신청자가 조업하고자 하는 구역과 가까이에 거주하며 본인의 어업으로 인한 민원의(어선 및 어구 보관 관련 민원, 일몰 이후 조업 관련 민원 등) 신속한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B시) 관내 지역 주민만 내수면어업 허가, 신고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비하여야 할 것임. 법적인 근거가 없어, 민원인에게 제대로 된 대처를 수 없는 상황임

(C군)내수면 어업허가-신고자는 대부분 관내 어로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거주자고, 어로어업을 제외하면 생계수단이 일용직 등으로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음. 또한, 내수면 어업허가 과정에서 수면 이용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자체 판단에 맡긴다는 답변이 대부분 돌아오기 때문에 허가 반력을 해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려사항에 대한 근거 조항이 부족한 실정. 관외자에게 허가를 남발하게 될 수 있음

(D시) 지역중복 허가를 제한하여 허가권 남발, 각 지자체 어업인 간 불필요한 마찰 등 문제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음

(E군) 찬성함. 그 이유는 관내 주민들에게만 내수면어업 허가해 주어야만 무분별한 포획(채취)을 방지하여 관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함임

(F시) 관내에도 신규 어업허가를 희망하는 자가 많아 경쟁이 심하므로 타 시군구 주민에게 허가신청을 허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짐. 농업에서 통작거리가 있듯이 어업에도 원거리를 오가며 어업을 할 수 없음. 관할 수면에서의 어업행위는 수면이 위치한 소재지 주민에게 허가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 행위라고 생각함

(G군) 허가 신청자의 주소지 이외의 내수면에 허가를 진행한다면 특정 내수면에 허가가 집중될 수 있으며 이는 내수면 자원상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H시) 내수면 특성상 위급,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필요

- (시) 지역민으로 제한해야 함. 공유수면인 낙동강에 어로어업 허가자가 늘어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부실함
- (J시/반대의견) 주소지에 따른 허가 제한은 귀어·귀촌에 대한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허가 이후 주소지 이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Q2) 지위 승계 처리 방식

- (A군) 지위 승계 서식이 별도로 없어, 기존 허가 폐업 처리 후 신규 허가처리함
- (B시)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어선(등록, 변경등록), 어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활용하여 민원 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있음
- (C군) 현재 새울 시스템에서 지위 승계 처리 시 내수면어업 허가 및 신고와 달리 민원처리사항 입력 없이 결과 처리로 진행되어 새울 시스템에서의 처리 및 관리가 어려우며 사용하고 있는 민원 서식 또한 해수면에 맞춰진 서식으로 내수면에 적용하는데 한계점이 있음
- (D시) 내수면에서의 지위 승계는 수산업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어업 종류가 상이한 점, 새울 시스템에서의 처리 과정 문제점으로 지자체별 자의적인 해석으로 처리하고 있는바 내수면어업법에 지위 승계와 관련한 규정과 서식을 반드시 신설하여 내수면어업법에 명시하고 관련 업무 처리에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Q3) 허가 사항 변경 업무 처리 방식

- (A군)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를 사용하여 재신청받음
- (B시)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어선(등록, 변경등록), 어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활용하여 민원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있음
- (C군) 수산업법을 준용하여 수산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서식]어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하고 있음. 내수면어업과 해수면어업의 종류가 달라 수산업법 준용이 어려워 시군마다 주관적 해석에 의해 처리되는 경우 다수 발생

(Q4) 허가 정수 설정 여부

- (12개 지자체) 허가 정수 설정하지 않음
- (3개 지자체) 자체 내부결재를 통해 허가 정수 설정함

(Q5) 내수면어업 관련 규정 및 서식 미비로 인한 어려움

- (A군) 민원에 맞는 서식이 없어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서식을 활용하여 민원을 접수하다 보니, 신고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고, 민원접수 담당자에게 매번 내수면 어업으로 접수코드를 신설하여 접수하고 있음(새울행정 시스템에도 없는 민원이므로)
- (B시) 내수면 어업허가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을 기입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내수면 어업 허가 시 주민등록번호 없이 허가를 발급하고 있음. 이로 인한 주소 이전과 같은 허가자에 대한 관리에 애로점이 있음. 허가 업무 처리에 있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필요함

- (C구) 내수면어업 신고서에는 1일, 허가 신청서에 5일이라고 처리 기간이 명시되어 있음. 내수면 어업법 제12조에서는 허가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는 수면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내수면 어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르면 수면 관리자가 14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D구) 담당자 변동에 따라 민원 서식 및 수수료 징수에 혼란이 발생함. 수산업법은 주로 근해·연안·구획어업과 같은 해수면어업을 규정하기에 내수면 실정에 맞도록 별도 규정이 필요함
- (E구) 법령에 어선으로 조업하는 경우에는 어선에 대한 허가,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경우에는 어구에 대한 허가를 각각 신청하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어선을 사용하여 내수면의 중간지점으로 이동하여 어구(그물)를 이용하는 자망어업은 어선에 대한 허가인지 어구에 대한 허가인지 모호함
- (F구) 내수면어업법 제22조 준용 규정을 둠으로써 입법 간소화를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현행 법 집행기관으로서 이 문제 등으로 각종 법적 해석 요청 등 불필요한 분쟁 원인을 야기하고 있음
- (G시) 내수면어업법의 불완전한 법령의 탈출구로 제22조(준용 규정)을 신설하여 수산업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내수면과 해수면의 어업종류나 여건이 전혀 달라 준용이 불가한 현실을 무시하고 준용토록 함으로써 내수면 지자체에서 인허가 시 어려움이 많음. 자의적 해석에 의한 행정행위는 추후 각종 민원 등으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조치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으며 신분상 징계 사례도 있음
- 수산업법 준용규정 삭제하고 내수면어업법에 지위 승계, 변경허가, 허가사항, 변경 신고, 신고사항 변경 신고, 폐업 신고,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 있음

(Q6) 기타 개선 방안

- (A군) 내수면어업 신청서 법적 처리기간 연장(2주 이상)내수면어업법 제12조에 의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수면관리자는 수면 이용 협의를 14일 이내에 결과를 알리게 되어있으나, 내수면어업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5일로 처리 기간 내에 수면 이용 협의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며, 내수면어업 허가 처리기간인 5일 이내에 관계 부서 의견 취합 후 허가 부서 검토 및 결정, 수면 이용 협의까지 추진하는 것에 현실적으로 업무 처리 불가함
- (B시) 내수면 어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 신고', '폐업'등에 대한 관련 조문과 민원 서식은 시급히 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 (C시) 내수면 어업법 제22조(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만으로 모든 민원을 처리하려면 실무적으로 어렵고, 지자체마다, 같은 지자체라도 담당자마다 매번 처리방법이 달라 '행정의 통일성'이 저해됨
- (D군) 내수면어업 담당은 대부분 수산직렬이 아닌 농업·축산·행정직렬이 담당하고 있어 1~2년마다 교체되므로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명확한 매뉴얼이 제시되어야 함

- (E군) 2019년 내수면 어업 수면이용동의 협의 의견 변경 알림이 있었음. 기존에는 신규 협의 불가였으나, 이번 의견 변경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받고자 하는 수면의 시설유지 및 하천 생태계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협의의견이 왔음. 그러나, 내수면 담당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판단이 불가함
- (F군) 「내수면어업법」 개정을 통한 관련 사항 신설 필요함. (지위 승계, 어업허가 변경, 유효기간 연장 등)
- (G군) 만약 준용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면, 수사업법 등 연관 법률을 어떻게 적용할지 주무부처에서 매뉴얼을 발간하여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밖에 추가 의견으로는, 지자체의 조례로 어업허가 신청의 반려 기준 설정 필요, 허가·신고 유효기간 만료자에게 만료 통지 여부와 절차에 관한 조항 신설 필요, 내수면어업법 상에 규정 위반 시 별도 행정처분 기준 마련 필요 등이 있었다.

〈표 3-17〉 지자체 추가 개선 건의 사항

조 항	내 용
제9조	지자체의 조례로 허가의 거부/반려 기준을 정할 필요 있음
제13조	허가, 신고 유효기간 만료자에게 만료 통지를 해야 하는지와 절차에 관한 조항 신설 필요
미비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1조를 내수면어업에 적용할 수 없음. 내수면어업법에 별도 행정처분 기준 마련 필요함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04

어업 허가 · 신고제도 유사사례 비교분석

제1절 연근해어업 허가 · 신고 제도분석

어업 분야의 허가 · 신고 제도는 1953년 「수산업법」을 제정하면서 정부 · 공공의 영역에서 어업 관리를 법제화한 제도로써, 현행 법률에서도 제정 당시의 기본 틀을 준용함으로써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제도라 할 수 있다.²⁸⁾ 「수산업법」은 국가의 수산자원 보호와 수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기본제도 마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어업관리 제도는 일정한 수면에서 포획 · 채취하는 어업을 대상으로 한 면허제도와, 해면 조업활동에 관한 허가제도, 이 외의 어업에 관한 신고제도를 비롯하여 면허 · 허가 · 준속기간 등 기타 관리조항을 규정하였다. 법률 제정 당시 허가어업은 어법과 어선의 동력 유무를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연안어업-시 · 도지사, 근해어업-해양수산부로 구분하여 허가관리 주체를 규정하는 현행 「수산업법」에도 그 체계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수면어업의 허가제 또한 「수산업법」에서 분법화된 조항이라 할 수 있

28) 수산업법(법률 제295호, 1953.9.9.)

다. 1971년 7월 「수산업법」은 일부개정을 통해 면허어업 규정에 담수조류 채취어업을, 허가어업에는 내수면 투망 어업을 포함시키는 등 내수면어업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로서 관련 조항을 법제화하였으며, 1975년 12월 내수면어업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담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이 제정됨으로써 「수산업법」상 내수면어업에 관한 사항은 삭제되었다.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상 어업의 구분은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분야별로 해당 어업이 세분화되었다.²⁹⁾ 현행 「내수면어업법」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이 제정된 법률로서 면허·허가·신고로 구분된 어업관리체계는 법률 제정 당시의 구조를 준용하고 있다. 또한, 「내수면어업법」상 내수면어업의 허가·신고관리 주체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이는 지자체로의 관리주체를 위임한 「수산업법」 연안어업의 허가신고제와 유사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어업에 관한 허가·신고제의 법률체계와 허가관리주체의 연혁에 따르면 「수산업법」상의 연근해어업 관리체계는 내수면어업 관리체계의 모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도의 개선방안을 다루고 있는 만큼, 현행 「수산업법」에서의 허가·신고제도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내수면어업법」과의 제도적 특성에 따른 차이점 등 발굴을 위해 유사사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표 4-1〉 어업 허가신고제도에 관한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 분화연혁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 법률 미제정	[법률 제295호, 1953.9.9., 제정] • 제11조 주무부장관에 의한 허가어업 • 제12조 지방장관에 의한 허가어업 • 제23조 신고어업(지방장관) → 내수면어업 미반영
1971년 「수산업법」상	[법률 제2300호, 1971.1.22., 일부개정]

29)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법률 제2835호, 1975.12.31.) 제정·개정 이유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 관련 조항 규정	- 제11조 수산청장의 허가어업 - 제12조 도지사의 허가어업 - 11. 투망어업: 내수면에서 투망 사용 채포 - 제23조 신고어업(지방장관) → 내수면어업 허가규정 법제화
* 「수산업법」에서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으로 내수면 어업규정 이관 및 신규조항 설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법률 제2835호, 1975.12.31., 제정] - 제8조 허가어업등: 도지사 - 자망, 투망, 종묘채포, 주낙, 어전 등 7개 어업 - 제9조 신고어업: 도지사 - 면허, 허가 외의 어업 신고 → 내수면어업 독자법을 제정, 허가규정 세분화	[법률 제2836호, 1975.12.31., 일부개정] → 내수면어업 관련 규정 삭제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서 「내수면어업법」으로 법 제명(2000.1.28.)	
* 「수산업법」 전부개정(1990.8.1.)을 통해 현행 연근해어업 허가제 체계 확립	
「내수면어업법」 [법률 제6255호, 2000.1.28., 전부개정] - 제9조 허가어업: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 - 자망, 종묘채포, 연승, 패류채취, 낚시, 낭장망, 각망 7개 어업 - 제11조 신고어업: 시장, 군수, 구청장 신고 - 면허, 허가 외의 어업 신고, 사유수면 신고 → 현행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 체계 확립	[법률 제4252호, 1990.8.1., 전부개정] - 제41조 허가어업 - 근해어업, 원양어업: 수산청장 - 연안어업 등: 시도지사 - 제44조 신고어업: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 면허, 허가 외의 어업 신고 → 연근해원양어업 허가 세분화
↓ 현행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허가신고 체계	
[법률 제18755호, 2022.1.11., 타법개정] - 제9조 허가어업: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자망, 종묘채포, 연승, 패류채취, 낭장망, 각망 6개 어업 - 제11조 신고어업: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면허, 허가 외의 어업 신고, 사유수면 신고 - 사유수면 현황 및 실태파악	[법률 제19807호, 2023.10.31., 타법개정] - 제40조 허가어업 - 근해어업: 해양수산부장관 - 연안어업 등: 시도지사 - 제43조 한시어업허가: 해양수산부 장관 승인을 통한 사·도·지사 허가 - 제48조 신고어업: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 면허, 허가 외의 어업 신고 - 신고자 준수사항

자료: 수산업법(법률 제295호, 1953.9.9.), (법률 제2300호, 1971.1.22.), (법률 제2836호, 1975.12.31.), (법률 제4252호, 1990.8.1.), (법률 제19807호, 2023.10.31.) 및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법률 제2385호, 1975.12.31.), 내수면어업법(법률 제6255호, 2000.1.28.), (법률 제18755호, 2022.1.11.)

1. 「수산업법」 허가·신고제도의 구성과 특징

「수산업법」은 수산업의 기본제도를 정하는 법률로서 연근해어업을 비롯한 수산자원 및 수면의 이용에 관한 전반의 관리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수산업법」이 적용되는 수면은 바다, 바닷가, 어업을 목적으로 한 육상 해수면으로 내수면어업의 수면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등 민물, 기수의 수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수산업법」은 총 11장 1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에 관한 규정은 제3장에, 그리고 허가 정수 결정에 관한 규정은 어업조정 등을 다루는 제5장에서 명시하고 있다..³⁰⁾

〈표 4-2〉 「수산업법」 구성 및 장별 주요조항

주요내용
총 11개 장 112개 조항 •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적용범위, 어장이용개발계획, 외국인에 대한 어업면허, 공동신청 등 • 제2장 면허어업 - 면허어업, 마을어업 등의 면허, 면허의 결격사유, 형의 분리 선고, 면허의 금지, 제한 및 조건, 우선순위, 유효기간, 한정어업면허, 어업권 취득 및 성질, 어업권의 등록, 이전, 분할 또는 변경, 면허사항의 변경 신고, 어업권 경매, 보호구역, 공익에 필요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면허어업의 취소 등 •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 허가어업, 허가어업 우선순위, 혼획 관리, 한시어업허가, 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시험·연구·교습어업, 어업허가 등의 유효기간, 신고어업, 허가 신고어업의 변경·폐업 등 • 제4장 어획물 운반업 - 어획물 운반업 등록, 제한, 정지, 취소, 수산가공업 등록 등 • 제5장 어업조정 등 -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조업수역 등의 조정, 허가 정수 등의 결정, 어선의 선복량 제한, 어선의 장비와 규모,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 및 확인, 유어장 지정,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어구·시설물의 철거, 표지의 설치 및 보호, 해기사 면허 취소 등 • 제6장 어구의 관리 등 - 어구생산업 및 어구 판매업의 신고, 의무, 영업정지, 어구판매량 등 제한, 실태조사, 어구 실명제, 폐어구 등의 직접 수거, 어구·부표의 회수 촉진 등

주요내용

- 제7장 수산업의 육성
 - 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시·도 연안 자원관리
- 제8장 보상·보조 및 재결
 - 보상, 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보상금 공탁, 입어, 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
- 제9장 수산조정위원회 - 설치, 기능, 구성과 운영
- 제10장 보칙 - 서류 송달의 공시, 과징금 처분, 포상,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 제11장 벌칙 - 벌칙, 몰수, 양벌규정, 과태료

자료: 수산업법(법률 제19807호, 2023.10.31.)

「수산업법」상의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40조는 허가어업에 관한 조항으로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의 기준을 설정하고 허가의 관리주체, 허가 원칙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허가·신고제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설정하기 위해 어업 허가의 우선순위, 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지위승계, 유효기간을 비롯하여, 면허, 허가어업 외의 어업에 대한 신고를 규정한 신고어업 등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수산업법」은 제정 당시부터 일부 어업에 허가 정수를 두는 어업조정 체계를 마련하였는데, 현행 법률에서 어업허가 정수를 정하기 위한 원칙은 제57조(허가 정수 등의 결정)에서 정하고 있다.³¹⁾

〈표 4-3〉 「수산업법」 허가·신고제도 조항 주요내용

조항	주요내용
제40조 (허가어업)	• 근해어업: 총톤수 10톤 이상 동력어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0톤 미만 동력어선 사용 어업 →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 허가 • 연안어업: 총톤수 10톤 미만 동력어선, 근해어업 및 구획어업 외의 어업 →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 허가 • 구획어업: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 시·도지사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총허용어획량 설정·관리 어업의 경우 8톤 미만 동력어선 구획어업 허가 가능) → 어선·어구·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30) 수산업법(법률 제19807호, 2023.10.31.)

31) 수산업법(법률 제19807호, 2023.10.31.) 제40조, 제57조

조항	주요내용
제41조 (어업허가의 우선순위)	• 허가 정수 우선허가 대상 1. 허가 유효만료 후 동일어업허가 신청 / 2. 어선, 어구, 시설 대체 위한 폐업 신고와 동시에 같은 종류 어업허가 신청 / 3. 어업허가 유예기간 만료, 유예 사유 해소 같은 종류 어업신청자 • 허가 정수 미달의 경우 우선순위 대상 1. 수산기술자 / 2. 조건불리지역 1년 이상 거주자 / 3. 신청 어업 5년 이상 경영 혹은 종사자 / 4. 신청한 어업의 1~5년 미만 경영, 종사 및 신청한 어업 과 다른 종류의 어업 5년 이상 경영, 종사자
제44조 (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 어업허가 및 한시어업허가 시 해양수산부령 적용사항 제한, 조건 허가 • 공익보호, 어업조정, 수산자원 보호 번식 필요성 인정 시 제한, 조건 허가
제45조 (어업허가 받은 자 지위승계)	• 어업허가 받은 어선·어구·시설물에 대한 어업허가 받은 자로부터 상속, 매 입, 임차한 경우 지위를 승계, 기존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효력 상실
제47조 (어업허가 등의 유효기간)	• 어업허가 유효기간은 5년, 허가 유효기간 중 시설대체 혹은 지위승계의 경 우 남은기간 효력 • 수산자원보호, 어업조정, 공익상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 단축 및 연장 가능
제48조 (신고어업)	• 면허어업(제7조), 허가어업(제40조), 한시어업허가(제43조), 시험·연구·교습어업(46조)외의 어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제49조 (변경·폐업)	• 허가·신고어업 변경 시 허가·신고관청의 변경허가 혹은 허가·신고관청에 변 경 신고, 폐업의 경우도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절차 정함
제57조 (허가정수 등의 결정)	•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 정수를 정하거나, 근해어업 허가 정수 제한 등에 따 라 어업허가 정수를 정할 경우 수산자원의 상태, 경영자 수, 그 밖의 자연·사 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수산조정위원회(제9장) 심의를 거침
제58조 (어선의선박량 제한)	• 지속적 수산자원 이용, 어업조정 위해 필요할 경우 허가어선의 선복량을 제 한할 수 있음 /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침

자료: 수산업법(법률 제19807호, 2023.10.31.) 및 제정·개정 이유, 내수면어업법(법률 제18755호, 2022.1.11.) 및 제정·개정 이유

1) 「수산업법 시행령」 허가·신고규정

「수산업법」에서 정한 허가제도의 시행 시 요구되는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은 「수산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수산업법」의 장 구성과 마찬가지로 시행령상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은 제3장에 기재되어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산업법」 제40조에서 정한 허가대상 어업(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의 세부 종류를 명시하고, 동법 제48조에서 정한 신고어업의 대상어업을 설명하고 있다. 근해어업은 총 21종, 연안어업 8종, 구획어업은 12종의 어업으로 구성되며, 신고어업은 나잠어업과 맨손어업이 해당한다.³²⁾ 「수산업법 시행령」 제31조는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 정수 및 정수 제한에 관한 조항으로, 대외관계, 어업협정 등 여건에 따라 어업금지가 적용될 업종의 경우 타업종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허가 정수 제한 예외규정과 동일한 상황에 대외여건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별표 5는 근해어업의 조업구역 및 허가 정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³³⁾

〈표 4-4〉 「수산업법 시행령」 허가·신고제도 주요내용

조항	주요내용
제21조 (근해어업의 종류)	• (종류) 21종: 외골이대형저인망어업, 쌍골이대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대형선망어업,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기선권형망어업, 잠수기어업 등 • (어구사용) 어업별 어구의 규모·형태·재질·사용량 및 사용방법(별표 2)
제22조 (연안어업의 종류)	• (종류) 8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조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복합어업(낚시, 문어단지, 손꽂치, 패류껍질, 패류미끼망) • (어구사용) 어업별 어구의 규모·형태·재질·사용량 및 사용방법(별표 2)
제23조 (구획어업의 종류)	• (종류) 12종: 건강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해선망어업,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

32) 수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550호, 2024.6.4.)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33) 수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550호, 2024.6.4.) 제31조, 별표 5

조항	주요내용
	강망어업, 패류형망어업 • (어구사용) 어업별 어구의 규모·형태·재질·사용량 및 사용방법(별표 2)
제26조 (신고어업)	• (종류) 나잠어업, 맨손어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조업수역의 조정, 조업의 허용 제한, 도구 등
제31조 (근해어업 조업구역과 허가 정수의 제한)	• (근해어업의 조업구역 및 허가 정수) 근해어업별 허가 정수 및 조업구역 설정 공시(별표 5) • (정수제한 예외) 외국과의 어업협정으로 특정어업 금지, 다른 어업 종사를 위한 어업허가의 경우, 외국관할수역 조업허용 시 등 • (허가제한) 외국과의 어업협정 또는 어업조정, 어업경영 안정을 위해 인정하 는 경우 근해어업 허가 제한가능

자료: 수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550호, 2024.6.4.)

2) 「수산업법 시행규칙」 허가·신고규정

「수산업법」 법령체계상 해양수산부령에 해당하는 「수산업법 시행규칙」은 허가·신고제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절차와 과정을 명시하고 있다. 허가·신고제에 관한 「수산업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업허가의 신청대상, 어업허가 신청 시 요건, 어업허가증 발급에 관한 사항, 어업의 종류별 허가 정수(연안, 구획어업), 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 신고어업의 신고절차, 어업의 변경허가, 폐업 등으로 신청인, 허가권자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결정 상황에 수반되는 행정처리 양식 등을 별표와, 별지로서 구성하고 있다.

〈표 4-5〉 「수산업법 시행규칙」 허가·신고제도 주요내용

조항	주요내용
제36조 (어업허가 신청대상 등)	• (대상) 근해어업: 어선 / 연안어업: 어선 / 구획어업 어구(새우조망어업, 실 뱀장어안강망어업, 패류형망아어업은 어선) • (허가신청 가능 업종 수) 근해어업, 연안어업, 어선허가 구획어업은 어선 구 조와 성능 고려할 때 같은 어선으로 두 종류 이상의 어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세 종류까지 허가신청 가능
제37조 (어업허가의 신청)	• (어업허가 신청서) 어업허가 신청서(별지 제36호)를 신청인 주소지 또는 조 업근거지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서 제출 • (신청인 주소지 및 선적항 = 수면관할 지자체)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 신

조항	주요내용
	청인의 주소지와 선적항은 그 허가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행정구역 내에 있을 것 • (신청 서류) 근해어업·연안어업: 선박등기부등본, 교육이수증명서, 어선검사증서 / 구획어업: 허가수면 위치 및 구역도, 동일수면 어업권자 및 허가자 동의서, 선박등기부등본, 어선검사증서, 교육이수증명서
제38조 (어업허가증 발급)	• 어업허가번호: 어업허가 등의 번호 부여 방법(별표 6) • 어업허가증: 어업허가증(별지 제37호) / 한시어업허가증(별지 제38호) • 두종류 이상 어업허가: 하나의 어업허가증에 모든 허가사항 기록 • 허가권자 어업허가증 발급사실 통보: 허가받은자의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 허가받은 어선 선적항 관할 시·도지사
제39조 (구획어업 허가 제한)	• (허가주체) 시장·군수·구청장 • (구획어업 허가조건) 시·도별 허가 정수가 있는 경우, 해당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40조 (허가어선의 대체)	• (어업 변경허가 신청서)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하여 허가 취득 시 어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기존어선조치계획 등을 첨부제출 → 어업 변경허가 신청서(별지 39호)
제41조 (어업 종류별 허가 정수 등)	• (근해어업) 별표 7: 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선 기관의 마력 및 부속선의 수와 규모 등 / * 근해어업 허가 정수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5에서 공시 • (연안어업) 별표8: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 정수 및 부속선에 관한 사항 • (구획어업) 별표9: 구획어업의 종류별 허가 정수
제42조 (어업허가의 유예)	• (허가 받은 자의 유예신청) 허가어선이 재난, 해양사고로 인해 침몰,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허가 어선이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허가어구가 멸실된 경우 → 어업허가 유예신청서(별지 제40호), 어업폐업 신고서(별지 제41호)
제43조 (어업허가의 제한)	• (어업허가 제한기간) 어업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한 어업허가의 제한기간(별표10) → 거짓, 부정방법 허가 취득(2년) / 휴업 신고 없이 1년 이상 휴업 혹은 허가 취득 후 1년 이내 어업 미개시(1년) / 허가받은 어업 외 어업(2년) 등 총 7개 사유
제54조 (신고어업의 신고)	• (어업신고) 신고인의 주소지, 조업장소 모두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어업신고서(별지 제49호) 제출
제61조 (어업허가대장의 기록·관리)	• (어업허가대장) 별지 제54호 기록: 어업의 허가, 지위 승계신고 수리, 어업허가의 유예, 변경허가, 어업폐업신고의 수리, 행정처분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허가신고 관련 주요구성〉

- [별표 6] 어업허가 등의 번호 부여 방법
- [별표 7] 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선 기관의 마력 및 부속선의 수와 규모 등

조항	주요내용
	• [별표 8]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 정수 및 부속선에 관한 사항 • [별표 9] 구획어업의 종류별 허가 정수 • [별표 10] 어업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한 어업허가의 제한기간 • [별표 11]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허가신고 관련 주요구성〉	
• [별지 제37호] 어업허가증 • [별지 제38호] 한시어업 허가증 • [별지 제39호] 어업 변경허가 신청서 • [별지 제40호] 어업허가 유예신청서 • [별지 제41호] 어업폐업 신고서 • [별지 제42호] 어업불허가 통지서 • [별지 제49호] 어업신고서 • [별지 제50호] 어업신고증명서	• [별지 제51호] 어업허가사항 변경 신고서 • [별지 제52호] 어업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별지 제53호]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54호] 어업허가대장(근해, 연안, 구획) • [별지 제55호] 어업휴업 신고서 • [별지 제56호] 어업재개 신고서 • [별지 제80, 81호] 허가어업 조업상황 등의 보고서 • [별지 제82호] 허가어업에 관한 처분 현황

자료: 수산업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649호, 2024.1.24.)

제2절 어업 분야 허가·신고제도 비교분석

허가·신고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의 주요 차이점은 허가신청인 및 신고어업자의 주소지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수산업법」상 해면어업 허가권자는 해양수산부 장관(근해어업), 시·도지사(연안어업), 구획어업(시장·군수·구청장)으로 구분되며 「내수면어업법」상 허가권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지방자치권 상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내수면어업의 허가권 발급체제와 사실상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신고어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 신청자의 주소지와 선적항은 허가 수면을 관할하는 지자체 행정구역 내에 있어야 하는 주소지 요건³⁴⁾을 두고 있으며, 해면 신고어업에서도 신고어업자의 신고일 기준 조업 장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한다는 요건³⁵⁾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내수면어업법」상에서는 이러한 주소지 요건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편, 과거 「내수면어업법」 체계상 허가 신청인의 주소지 요건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주소지 요건은 2010년 8월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허가신청처가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지자체’로 변경되었는데, 주요 사유로는 허가대상 어업이 수면에서의 일정 시설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고, 허가 시 수면 관리자와 협의가 필요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확인된다.³⁶⁾

종합해 보면, 현행 제도상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의 경우 특별히 어업허가 신청자의 주소지가 수면을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에 있어야 하는데, 이는 지역 주민만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어업처분을 하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지역에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어업인 대부분이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인 까닭에 어업허가 신청자가 기본적으로 거소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별다른 제약조건이 되지 않고 있다. 반면, 내수면에서는 허가신청자의 주소지(거소) 요건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사실상 전국 모든 내수면에서 누구나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셈이다. 이는 지역 주민이 아닌 자라도 어업허가 신청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 발전과 경제적 이해를 반영하여야 하는 지자체의 운영 기조와는 배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상존한다.³⁷⁾

34) 수산업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649호, 2024.1.24.) 제37조제1항제2호

35) 수산업법(법률 제19807호, 2023.10.31.) 제48조제1항

36) 내수면어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3호, 2010.8.11.) 제정·개정 이유

37) 부경대학교 신용민 교수 서면자문(2024.8.9.)

〈그림 4-1〉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허가·신고제도 비교

구분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허가 어업	대상어업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자망어업, 종묘채취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낚시어업, 각망어업
	허가대상	어선, 어구, 시설	어선, 어구
	허가권자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허가신청 및 신청인 요건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조업근거지(양륙항 또는 선적항)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의 주소지와 선적항은 그 허가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행정구역 내에 있을 것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지 또는 선적항이 허가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행정구역 내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허가권자의 어업허가 신청서 제출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고려사항	연근해어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과 어업의 종류 및 어선의 규모별로 조업구역, 어구·어법, 어구의 규모 및 표지부착 등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	허가시 내수면의 용도, 자원상태, 경영 및 이용에 관한 상황고려 / 어업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승인을 받아 허가어업 조업 구역, 규모, 방법 제한 가능
신고 어업	대상어업	나잠어업, 맨손어업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낙시어업 / 사유수면에서의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처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신고어업자 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신고일을 기준으로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에 한정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자료: 부경대학교 신용민 교수 서면자문(2024.8.9.) 및 수산업법(법률 제19807호, 2023.10.31.), 내수면어업법(법률 제18755호, 2022.1.11.)

이 밖에도 허가·신고제도에서 「수산업법」은 「내수면어업법」의 비해 상당히 많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수산업법」은 허가어업, 신고어업에 관한 기본 규정과 더불어 한시어업허가, 지위승계, 변경·폐업, 허가 정수 등의 결정 등 제도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세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4-2〉「내수면어업법」 체계상 규정되지 않은 허가신고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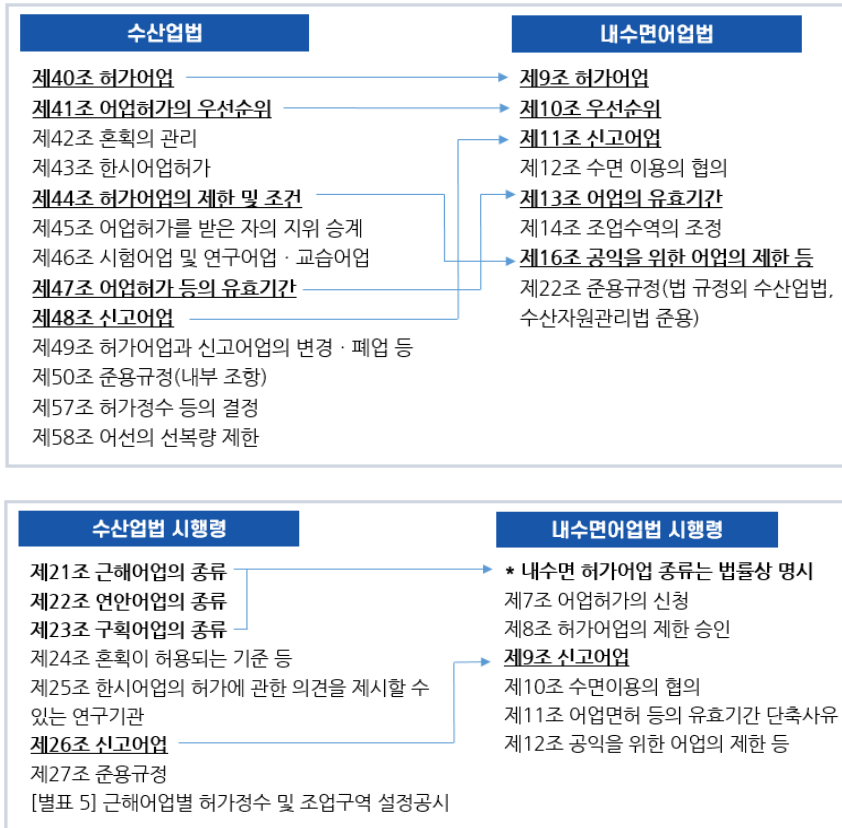
번호	항목	수산업법 및 하위법령
1	어업허가 주소지 조건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 •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 신청인 주소지와 선적항은 수면관할 지자체에 있을 것
2	허가개수 제한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 같은어선으로 두 종류 이상의 어업이 가능할 경우 같은 어선으로 세 종류까지 어업허가 신청가능
3	신고어업 주소지 조건	「수산업법」 제48조제1항 • 어업을 하려는 자(신고일을 기준으로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에 한정
4	신고어업자 준수사항	「수산업법」 제48조제6항제1호 • 신고어업자의 주소지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관할 수역에서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할 것
5	신고 효력 상실 (취소)	「수산업법」 제48조제7항 •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 가능 「수산업법」 제48조제8항(효력상실, 취소) • 준수사항 3회 위반 등
6	허가 연장절차	「수산업법」 제47조제2항 • 어업조정, 그 밖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유효기간을 단축 혹은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3조
7	변경허가, 변경신고, 폐업	「수산업법」 제49조(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 폐업) • 제1항(변경허가), 제2항(변경신고), 제3항(폐업신고) 「수산업법 시행규칙」 • 제56조(변경허가), 제58조(변경신고), 제60조(폐업신고)
8	지위승계	「수산업법」 제45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 지위승계 받은 날부터 신고 30일 이내(상속은 60일)
9	한시어업허가	「수산업법」 제43조(한시어업허가) 「수산업법 시행규칙」 • 제46조(한시어업허가 승인), 제47조(한시어업허가 연장신청)
10	허가정수	「수산업법」 제40조제4항제2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정수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1조(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 • 제2항(연안어업 종류별 허가정수), 제3항(구획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

자료: 수산업법(법률 제19807호, 2023.10.31.), 수산업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649호, 2024.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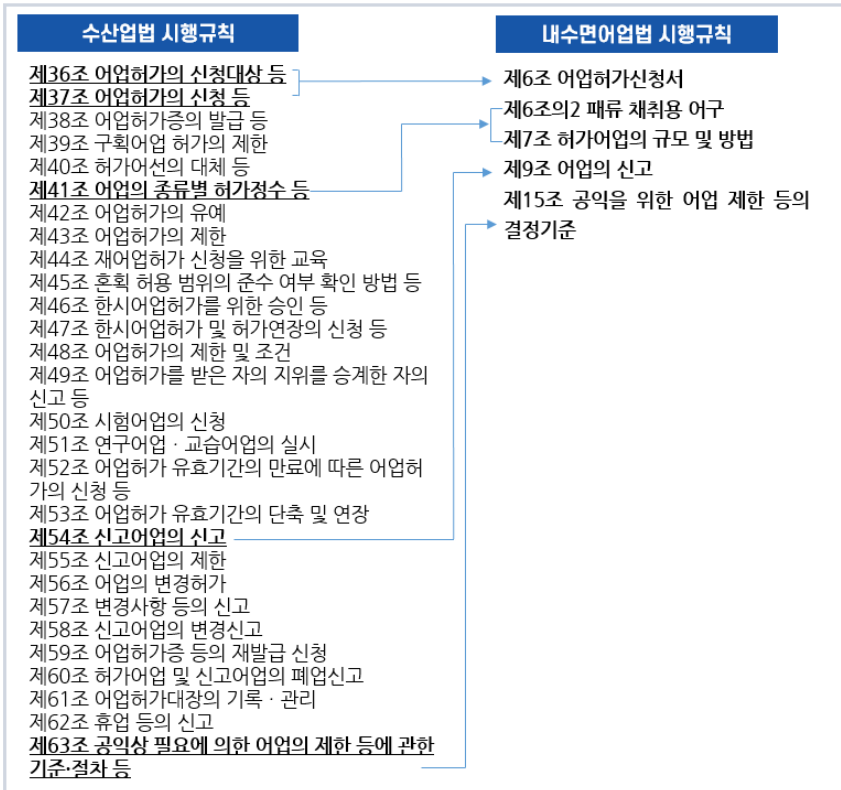
그러나 「내수면어업법」의 경우 허가어업, 우선순위, 신고어업,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변경, 폐업신고, 연장, 지위승계 등에 대한 부분의 규정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세부내용상 허가·신고제도에 관한 주소지 요건, 허가 정수 등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준용규정(제22조)을 두고 「내수면어업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부분은 「수산업법」과 「수

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을 명시하고 있다.³⁸⁾ 이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도 두 법률은 규모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4-3〉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법령체계상 허가·신고 관련 조항 비교



38) 내수면어업법(법률 제18755호, 2022.1.11.) 제22조



자료: 수산업법(법률 제19807호, 2023.10.31.), 내수면어업법(법률 제18755호, 2022.1.11.), 수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550호, 2024.6.4.), 내수면어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550호, 2024.6.4.), 수산업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649호, 2024.1.24.),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581호, 2023.2.3.)

이러한 법률간 차이는 해면어업이 내수면어업에 대비 산업규모, 어업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당연한 특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또한,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수산업법」과 동일한 형태로 규율대상을 확대·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비된 기준과 준용규정의 혼재는 제도의 운영, 결정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간 혼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3절 해외 유사사례 분석

1. 일본 내수면어업 관련 규정

일본 내수면어업 정책은 수산자원 회복, 어장환경의 재생 및 관리, 다면적 기능의 향상, 내수면 수산물 부가가치 확대 등의 목표 아래, 농림수산업, 국토교통성 등 관계 부처, 도도부현, 협동조합이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다.³⁹⁾ 내수면어업 활동 권한에 관한 규정은 「어업법」과 「내수면어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된 법률체제로 정하고 있으며, 「어업법」은 제5종 공동어업권, 「내수면어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내수면 양식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내수면어업 규정과 비교해보면, 내수면 어업 활동 권한의 관리주체를 도도부현 지사로 정하여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는 형태는 유사하나, 어업 관리를 허가제도가 아닌 공동어업권으로 운용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형태는 내수면을 공동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어업질서를 유지하고, 지역사회 기반확보, 자원보호 및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등 어장을 기반으로 한 관리체계가 형성된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⁴⁰⁾

1) 「어업법」 및 제5종 공동어업권

일본의 어업관리제도는 「어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허가제도는 해면어업을 기반으로 장관(농림수산대신) 허가어업과 지사(도도부현) 허가어업으로 구분되며, 국내 수산업법의 규정과 유사한 형태로 허가 신청자의 책무, 허가조건, 유효기간, 변경, 신고, 취소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39) 일본수산업청, 내수면에관한 정보 홈페이지(검색일: 2024.8.14.)

40) 규슈어업조정사무소, 어업권 홈페이지(검색일: 2024.8.14.)

한편, 우리나라 어업별 관리체계의 경우 해면어업은 「수산업법」에서, 내수면 어업은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양식어업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관련 규정을 소관하고 있으나, 일본은 「어업법」을 통해 내수면어업(어로)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고, 내수면 양식어업은 「내수면어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다. 「어업법」상에서 내수면 어업권한은 해면 이외의 수면에서 경영하는 제5종 공동어업권으로 면허에 해당하며, 면허의 관리·운영 주체는 도도부현 지사에 있다. 이에 따라, 제5종 공동어업권은 해당 내수면을 기준으로 활동 권리가 부여되며, 해당 내수면이 아닐 경우에는 면허할 수 없다. 제5종 공동어업권은 면허 대상자인 어협 등 단체 및 해당조합원의 채포, 포획과 같은 어로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수산동식물의 증식이라는 자원관리 의무도 포함한다. 또한, 「어업법」 제8장은 내수면어업에 대한 관리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내수면어업권의 제한과 취소, 내수면 어장관리에 관한 조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⁴¹⁾

〈표 4-6〉 일본 「어업법」 내수면어업 관련 규정

항목	주요내용
내수면 어업권	• (어업권 종류) 정치어업권, 구획어업권, 공동어업권(내수면) • (내수면어업권) 제5종 공동어업으로 해면 이외의 수면 또는 호수에 준하는 수면에서 경영하는 어업으로, 공동어업을 영위할 권리 • (면허 대상자) 해당 수역의 어협
내수면 어업권 운영 규정 (증식: 자원관리)	• (제한조건) 제5종 공동어업은 해당 내수면이 수산동식물 증식에 적합하고 이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증식하는 경우가 아닐 시에는 면허하여서는 안 됨 • (어업권 의무와 취소) 도도부현 지사는 제5종 공동어업 면허어업자가 수산동식물 증식을 게을리한다고 인정될 경우, 내수면어장관리위원회를 통해 증식계획을 정하고, 해당 계획을 준수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어업권을 취소하여야 함
내수면어장관리 위원회	• (위원회 설치) 도도부현에 내수면어장관리위원회를 둠(내수면어업 규모가 현저히 작은 지역의 경우에는 유예 가능) • (감독) 내수면어장관리위원회 감독 주체는 광역자치단체 지사 • (기능) 내수면 수산동식물의 채포, 양식, 증식에 관한 사항을 관리

자료: E-Gov, 漁業法 홈페이지(검색일: 2024.8.14.)

41) E-Gov, 漁業法 홈페이지(검색일: 2024.8.14.)

2. 미국 내수면어업 관련 규정

미국의 내수면어업 관리·운영체계는 주(State)별 규정에 근거한다. 대체적으로 미국은 내수면에서의 어업활동을 상업적 어업(Commercial Fishing)으로 간주하며, 어업인의 활동 권한은 면허(License)의 형태로 부여하고 있다. 내수면어업 면허는 수면 자원 활용을 희망하는 신청인이 주별 담당 기관에 면허료(Fee)를 지급하여 획득하는 형태로서, 이러한 면허 신청은 거주인(Resident), 비거주인(Non-Resident)으로 구분함과 동시에 신청 시 비용에 차등을 두고 있다. 또한, 주별로 어획이 허용되는 어종과, 활용 장비 등 지역별 어업 특성에 근거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내수면어업 관리를 이행하고 있다.

1) 플로리다주 내수면어업 관련 규정

〈그림 4-4〉 플로리다주 내수면어업 관리·운영규정

〈플로리다주 내수면 상업어업 안내 홈페이지〉

〈플로리다주 내수면 상업어업 규정집〉

Commercial Freshwater Fishing Licenses - Resident & Non-Resident

Commercial Freshwater Fishing

Any resident or non-resident person who takes freshwater fish or frogs by any lawful method prescribed by the Fish and Wildlife Conservation Commission for purpose of sale is required to possess a Commercial Fishing License.

- Allows harvest of non-game species only
- Holders of this license **may sell** to anyone, but **may not buy** fish for the purpose of sale.
- All boats engaged in commercial fishing shall have at least one commercial licensee on board.
- License required even for the use of trotlines of 25 hooks or less when fish are taken for purpose of sale.
- Senior citizens are not exempt from purchase of commercial fishing licenses.
- A valid Resident Commercial Freshwater Fishing License also allows recreational fishing.
- No Commercial Freshwater Fishing License or Commercial Freshwater Fish Dealer's License is required to take or sell live bait, other than freshwater fish or frogs.

A) Resident Commercial Freshwater Fishing License (fish & frogs).....\$25.00

B) Nonresident Commercial Freshwater Fishing License\$500.00

Additional license and/or permit may be requi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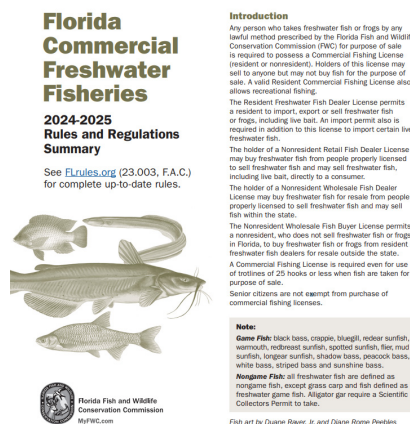
- If you use Haul Seine Gear you will need to apply for a Haul Seine Gear Permit
- If you harvest American Eel you will need to apply for an American Eel Permit

Freshwater Fish & Frog Dealer's License - Residents

Commercial Freshwater Dealer's Licenses - Non-Residents

Wholesale Buyer's License - Non-Residents

Conditional/Prohibited/Nonnative Species Permit



자료: Florida Fish and Wildlife Conservation Commission 홈페이지(검색일: 2024.8.13.)

플로리다주의 내수면어업 규정은 플로리다 어류 야생동물 보호 위원회(Florida Fish and Wildlife Conservation Commission)에서 주관하며, 어업활동에 대한 권한을 '상업적 어업활동에 대한 면허(License)', '장비 사용 및 특정 어종에 대한 허가(Permit)', '내수면어업 어획물 유통 및 판매에 대한 면허(License)' 등으로 구분·운영하고 있다. 어업활동 신청인은 거주인, 비거주인으로 구분하며,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어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비거주자의 경우 거주자 대비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거주자 요건은 플로리다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써 증빙으로 '유효한 플로리다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플로리다 유권자 정보카드', '플로리다 주택 세금 공제 증명서'가 요구된다. 이 밖에도 내수면어업 관리를 위해 어구 및 장비에 관한 요건, 어획 허용 어종 및 체장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⁴²⁾

2) 미시시피주 내수면어업 관련 규정

미시시피주의 내수면어업 규정은 미시시피 야생동물, 수산업 및 공원 관리국(Mississippi Department of Wildlife, Fisheries, & Parks)에서 주관한다. 미시시피주 내수면에서의 활동 권한은 '상업적 어업활동에 대한 면허'와 더불어 '슬랫 바스켓(Slat Basket)'이라는 특정 어획 장비 사용 면허를 통해 부여되며, 해당 장비를 활용할 시에는 규격과 활용규칙 등 세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어획 어종, 어구 요건 등의 관리체계는 플로리다주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한편, 미시시피주에서는 수면을 공유하는 경계 주(아칸소주, 루이지애나주, 루이지애나즈, 테네시즈)와는 상호 면허 협약(Reciprocal License Agreement)을 맺음으로써 해당 경계수면에서 면허를 보유한 어업인의 어업활동을 허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42) Florida Fish and Wildlife Conservation Commission 홈페이지(검색일: 2024.8.13.)

이러한 경계수면, 공유수면에서의 어업활동은 어획어종, 장비규격 등 관련
주 규정을 상호 준수하여야 한다.⁴³⁾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제4장에서는 「내수면어업법」의 허가·신고제도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 연근해어업의 허가·신고제도를 규정하는 「수산업법」과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내수면어업법」상 관리 체계와의 비교 분석을 실시
하였다. 더불어, 해외사례로서 일본의 내수면어업과 연계된 법률의 검토 및
미국의 내수면어업 관리규정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도출
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산업법」은 「내수면어업법」과 대비하여 허가 및 신고규정에 대
한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규모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형태의 허가·신고제도임에
도 불구하고 「내수면어업법」상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해
면어업과 내수면어업의 특성과 다양성, 산업규모 등을 고려할 때 「수산업
법」상의 규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받아들일 수 있으나, 「내수면어업법」
에서 규정하지 않는 지위승계, 변경·폐업, 허가 정수 등의 결정 등 제도 운
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세부 규정은 내수면어업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내수면어업법」은 이러한 미비한 규정에 대해 준용규정을 두고 보
완 체계를 마련해 두었지만, 준용 가능 여부는 법령 해석상 명확하지 않다

43) Mississippi Wildlife, Fisheries, & Parks 홈페이지(검색일: 2024.8.13.)

는 법제처 법령사례가 있었던 바⁴⁴⁾, 제도의 운영, 결정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간 혼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숙고하여야 한다. 제도 운영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수산업법」과 동일한 형태로 규정을 신설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러한 규정 미비 사안의 경중과 우려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허가·신고제도 운영과 관련한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의 주요 차이점이 허가신청인 및 신고어업자의 주소지 요건이라는 점이다. 「수산업법」상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규정은 신청인의 주소지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만, 「내수면어업법」에서는 허가권 및 신고처가 지자체로 규정됨에도 불구하고 두 제도와 관련하여 주소지 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시 말해, 전국의 내수면에서 누구나 어업허가,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도적으로 무분별한 허가·신고어업 신청에 대한 방지책이 부재하다는 점과 행정력 소모 우려, 지역 발전과 경제적 이해를 반영하여야 하는 지자체 운영 기조와의 배치, 나아가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 소득증대라는 「내수면어업법」의 입법 목적과의 상충 등이 제기될 수 있다. 더불어, 일본은 공동어업권 제도를 도도부현의 어장을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해당 어협 등 보다 명확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어업활동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미국의 사례에서도 신청인의 거주지에 따라 규정의 차등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소지 요건은 여타 미비한 조항대비 개선의 필요성이 명확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44)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9-0451(2019.12.05.) (검색일: 2024.8.13.)

05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도 개선 방안

제1절 허가·신고제도 개선의 원칙과 기준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도를 개선하고자 할 때는 일관된 원칙과 기준에 의거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내수면어업법의 입법 취지, 개정 이유, 목적 조항에서 지향하는 핵심 가치를 정리하여 허가·신고제도 개선에 대한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제3장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수면어업법의 입법 취지, 2000년 전부개정 이유, 제1조 목적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내수면어업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지역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이다. 이는 법의 목적 조항에 명시되어 있기도 하거나 불법 어업이 빈번하고 고갈되기 쉬운 내수면 수산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가치이다. 둘째, 내수면 수산자원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역 주민 소득 증대이다. 이 역시 목적 조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부터 지속적으로 명시되어 온 입법 취지이다. 셋째는 기초지자체 권한 강화를 통한 지역 맞춤형 어업관리이다. 2000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서 내수면어업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면허 허가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이양되고, 개정 이유로 지역 특성에 맞는 어업관리를 위한 개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법에

서 명시된 위 세 가지 입법 취지와 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허가·신고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림 5-1〉 허가·신고제도 개선의 판단 기준



자료: 저자 작성

제2절 어업허가·신고제 개선 과제

본 연구에서 내수면어업법 법률 분석, 수산업법과의 비교 검토, 문헌조사, 수산분야 법률 전문가 자문, 지자체 담당자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수면어업법 허가·신고제도 관련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우선, 어업허가 시 관할 지자체에 주소를 둔 주민만 신청할 수 있도록 주소지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 8월 11일 자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청자의 주소지 관련 규정을 수면 관할 지자체로 변경하여 현재의 조항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2010

년 시행령 개정 당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수면 관할 지자체로 변경한 이유는 수면에 설치된 시설물 등과 관련하여 수면관리자와의 협의를 원활하게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이었다.⁴⁵⁾ 그러나, 실무적으로 수면관리자와의 협의가 형식적인 경우가 많고, 결국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이었어서, 당초 의도한 취지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면 관리가 오히려 어려워지는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둘째, 내수면어업의 특성상 원거리에서 조업하기 어렵고, 비거주민의 경우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나, 책임소재를 가리는데도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는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민 소득 증대라는 내수면어업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 또한, 지자체 권한 강화를 통한 지역 맞춤형 어업 관리라는 개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셋째, 내수면에서의 신고어업에 대해서는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상 신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⁴⁶⁾ 신고어업인 어살어업, 통발어업 등이 수면에 대한 시설의 설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보면, 신청 방법마저 구분되어야 할 당위성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신고어업과의 정합성 차원에서 허가어업에 주소지 관할 신청 조건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지자체는 「지방자치법」 제11조(사무배분의 원칙) 제1항,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민의 편익,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만큼, 비 지역주민의 이해를 반영하는 행정사무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앞에서 개정 방향으로 언급한 ‘기초지자체 권한 강화’와 ‘지역 주민 소득 증대’라는 입

45) 당시 개정 사유는 “내수면에서의 자망어업, 낚시업 등에 대한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어업허가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허가대상 어업은 해당 수면에 일정한 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고, 허가 시 해당 수면관리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허가관청을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46)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법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표 5-1〉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자료: 지방자치법 제11조

다음 개선 과제는 허가 개수 제한 조항의 신설이다. 현행 내수면어업법 체계에 어선 또는 어구당 신청할 수 있는 허가의 개수에 제한이 없어, 현행 법상으로는 어선 또는 어구당 최대 여섯 개 어업 모두에 대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제1절에서 도출된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육성’이라는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수산업법에 어선당 허가 개수가 세 개인 점을 참고하여, 내수면어업 허가에도 종류의 개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개선 과제는 신고어업에 거주기간과 조업일수 조건을 추가하여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수산업법상 신고어업과 같이⁴⁷⁾ 내수면 신고어업에 대해서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해서만 신고를 수리하고, 연간 60일 이상 조업하도록 준수 조건을 부여하여,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실제 조업을 하지 않으면서 신고만 득하는 허위 어업인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어업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이를 통해 ‘내수면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라는 법의 목적과 입법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

47) 수산업법 제48조

다음으로 변경, 폐업, 지위 승계 등 현재 관련 조항과 서식이 없어 현장 실무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업무들에 대해 신규 조항과 서식을 제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내수면어업허가 변경 이력 등을 새올행정시스템 전산상에 기록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해면어업은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1조를 근거로, 어업의 허가, 지위 승계신고, 유예, 변경허가 및 폐업 신고 등의 이력이 새올행정시스템 전산상에 기록되고 있으나, 내수면어업은 법적 근거 미비로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변경 이력을 별도 수기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원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중요 내용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지자체 담당자 의견 조회 결과 새올행정시스템 관리 부서에 여러 차례 시스템 구축을 요청하였으나 근거 법령이 있어야 내수면어업 이력 관리 기능 구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내수면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라는 내수면어업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제22조의 모호한 준용 규정으로 인해 일선 업무 처리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조문을 삭제하거나, 또는 주무 부처에서 명확한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

개선 과제의 마지막으로 현행 허가·신고 업무 처리 일수가 5일로 명시⁴⁸⁾되어 있는데, 이는 내수면어업법 제12조와 시행규칙 제10조2에 따라 면허·허가·신고 검토 시, 수면관리자와의 협의 기간이 14일 이내⁴⁹⁾⁵⁰⁾로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규정 간 정합성이 떨어지고, 실무적으로 비현실적이다. 처

48) 내수면어업법 제11조(신고어업)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9) 내수면어업법 제12조(수면 이용의 협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50)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수면 이용 협의의 처리기한) 수면관리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면 이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리 일자를 실무적으로 가능하도록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표 5-2〉 내수면어업법 허가·신고제도 개선 과제

	항 목	현 행	개선(안)
1	허가 신청 시 주소지 조건	없음	허가 신청 시 주소지 조건 추가하여 관할 지역 거주 주민만 어업허가 발급 (수산업법 시행규칙 37조 1항 참고)
2	허가 개수 제한	없음	어선(어구) 당 3건 (수산업법 시행규칙 36조2항)
3	신고어업 주소지 조건	없음	6개월 이상 관할 지자체 거주 조건 추가 (수산업법 48조 1항)
4	신고어업 조업일수 준수 조건	없음	연간 조업일수 60일 이상 조건 추가 (수산업법 48조 6항 1호)
5	신고 효력 상실	없음	준수사항 위반 시 신고 효력 상실 조항 추가 (수산업법 48조 8항)
6	허가 지위 승계	없음	신설 (수산업법 45조, 수산업법 시행규칙 49조 별지 46호 참고)
7	허가·신고의 변경	없음	신설 (수산업법 49조, 시행규칙 56조, 별지 39호 참고)
8	허가·신고의 폐업	없음	신설 (수산업법 49조, 시행규칙 60조, 별지 41호 참고)
9	허가 대장 관리	없음	신설 (수산업법 시행규칙 61조 참고)
10	준용 규정	제22조 수산업법 준용	조문별 매뉴얼 작성으로 명확화, 또는 삭제
11	허가, 신고 처리기간	법률 (신고 5일), 신청서 서식에 명시 (허가 5일)	“수면관리자 협의 기간(14일)을 처리 기간 산입에서 제외” 문구 추가
12	신고어업 신고 처리 기간	신고서 서식에 명시 (신고 1일)	법률에 5일로 명시, 서식 상 1일은 단순 오기. 5일로 수정 필요.

자료: 저자 작성

제3절 허가·신고제도 개정(안) 제안

본 절에서는 위 제2절에서 도출된 허가·신고제도 개선 과제들에 대해 내수면어업법과 수산업법을 비교하고, 현장 실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짚어 본 후 구체적인 법률 조문의 개정(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허가 신청 시 주소지 조건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에는 신청자의 주소지는 허가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행정구역 내에 있을 것이라고 명시하여, 어업 허가는 해당 주민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제출한다고만 되어있어, 신청서를 제출할 기관만 명시하였을 뿐, 해당 지자체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다. 이에 따라 타 지역 주민이 다른 지역의 하천에 내수면어업 허가를 신청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현장 실무에서 혼란과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표 5-3〉 수산업법상 허가 신청 시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7조(어업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조업근거지항[양륙항(揚陸港) 또는 선적항을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36호서식의 어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
2.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의 주소지와 선적항은 그 허가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행정구역 내에 있을 것

자료: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7조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 관련한 개정 방안은 현재의 「내수면어업법」 상 어업허가 신청을 신고어업 신청 및 「수산업법」 상의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신청과 같이 주소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선 방안으로는 허가 신청서를 기존대로 수면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제출하되, 신청인의 주소지가 관할 지자체 행정구역내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표 5-4〉 어업허가 신청 조항 개정안

현행	개정안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7조(어업허가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으로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선에 대하여,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구에 대하여 각각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를 <u>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u> 제출하여야 한다.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7조(어업허가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으로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선에 대하여,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구에 대하여 각각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를 <u>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u>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주소지는 신청서 제출 특별자치도·시·군·구의 행정구역 내에 있어야 한다.

자료: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7조

2. 허가 개수 제한 신설

「수산업법」 상에는 동일 어선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허가의 개수가 3개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내수면어업법」 상에는 이러한 허가 개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표 5-5〉 「수산업법」상 허가 개수 제한

수산업법 시행규칙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6조(어업허가의 신청대상 등) ① 생략 ② 근해어업이나 연안어업 또는 제1항제3호가목의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어선의 구조와 성능을 고려할 때 같은 어선으로 두 종류 이상의 어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어선으로 세 종류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자료: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6조

현행 「내수면어업법」 규정상으로는 허가 개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동일 어선어구에 대해 내수면어업 허가를 여덟 종 모두 취득할 수 있는데, 이는 내수면 수산자원관리에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많으므로, 어선어구당 신청가능한 허가의 개수를 「수산업법」과 동일한 세 개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아래의 개정(안)을 제안한다. 다만, 적절한 허가 개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내수면 수산자원에 대한 자원 평가와 종합적 관리 계획의 수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수산업법」 상에서는 단일 허가가 원칙이되, 주 어종과 어기가 다를 경우 어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예외적으로 복수 허가를 발급하는 것인 만큼, 내수면의 경우도 어종 및 어기를 고려해 지역민의 생계 보장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복수 허가를 발급하는 것이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표 5-6〉 어업허가 개수 제한

현행	개정안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7조(어업허가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으로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선에 대하여,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구에 대하여 각각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7.>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를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1.>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7조(어업허가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으로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선에 대하여,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구에 대하여 각각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7.>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를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1.> ③ <u>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같은 어선 또는 어구로 두 종류 이상의 어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어선 또는 어구로 세 종류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u>

자료: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7조

3. 신고어업 거주조건, 조업일수 준수 의무, 효력 상실 규정 신설

「수산업법」 상에는 신고어업을 신청하기 위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항이 있고, 연간 60일 이상 조업해야 하는 준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신고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⁵¹⁾ 반면, 「내수면어업법」 상에는 이러한 규정이 부재하다.

〈표 5-7〉 「수산업법」상 신고어업 거주조건, 조업일수 준수 의무, 정지 및 효력상실 조항

수산업법
「수산업법」
제48조(신고어업) ① 제7조·제40조 또는 제43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신고일을 기준으로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에 한정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⑥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고어업자의 주소지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 수역에서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할 것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수면에서 그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하여 조업하지 아니할 것
3. 수산자원보호나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⑧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어업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하 생략)
1.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2. 제7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제한·정지 처분을 2회 이상 위반한 때
3. 제49조제3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폐지신고를 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
⑨ 생략

자료: 수산업법 제48조

51) 수산업법 제48조

내수면 신고어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산업법」을 참고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실거주자로 제한하고, 연 60일 조업일수 준수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시 신고의 효력이 정지 또는 상실되도록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

〈표 5-8〉 신고어업 거주 기간 및 준수 조건 추가 개정(안)

현행	개정(안)
「내수면어업법」 제11조(신고어업) ① 내수면에서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내수면어업법」 제11조(신고어업) ① 내수면에서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u>신고일을 기준으로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에 한정한다</u>)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신설〉	⑥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고어업자의 주소지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 수역에서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할 것 2. 수산자원보호나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⑧ 신고를 한 자가 제7항에 따른 제한정지처분을 2회 이상 위반 시 어업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자료: 내수면어업법 제11조

4. 허가 지위 승계

「수산업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어업허가의 지위 승계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내수면어업법」 상에는 허가 지위 승계에 관한 조항이 부재하여 실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실무를 처리하고 있는 등 행정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내수면어업은 허가 정수제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으므로, 지위 승계가 불필요하며, 기존 허가 취소 후 신규 허가를 발급하면 된다는 입장도 있다.⁵²⁾ 그러나 행정 처분 등 이력 관리 차원에서 지위 승계 처리가 필요하고, 또한 어업허가가 재산권으로 인식되므로 명시적인 지위 승계 관리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5-9〉 「수산업법」상 허가 지위 승계 조항

수산업법
「수산업법」
제45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어선등”이라 한다)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임차한 자(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와 제27조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여 관리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해당 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승계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등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52) 이현석(2012)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어업허가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의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9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해당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어선이나 어구의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선이나 어구를 상속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어선이나 어구를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어선이나 어구를 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종전의 어업허가증
4. 어선검사증서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또는 어구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구분과 같다.

1. 어선 또는 어구의 기준
 - 가. 어선: 종전의 허가받은 어선과 동일하고 「어선법」 제28조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것
 - 나. 어구: 종전의 허가받은 어구와 동일하고 영 별표 2에 따른 어업별 어구의 규모 · 형태 · 재질 · 사용량 및 사용방법 기준에 적합할 것

2.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주소지와 선적항이 그 허가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의 행정구역 내에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선박국적증서 등
- ④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종전의 허가받은 어선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 지위 승계를 신고할 때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명칭에 관한 변경 신고를 함께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신고인이 제2항에 따른 어선 또는 어구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 및 자격을 갖추어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어업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자료: 수산업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따라서, 아래와 같이 현행 「내수면어업법」 내에 부재한 어업허가의 지위 승계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표 5-10〉 지위 승계 조항 신설(안)

현행	개정안
〈신설〉	「내수면어업법」 제00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제9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구(이하 이 조에서 “어선등”이라 한다)를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임차한 자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해당 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승계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등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어업허가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의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자료: 저자 작성

〈표 5-11〉 지위 승계 신고서 신설(안)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 00 호서식]

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서(내수면어업)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승계를 하는 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용어선 또는 어구	어선의 종류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총톤수(톤)			
	마력			
	어구시설의 종류 및 규모			
	주 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한시어업
허가번호				
어업의 종류				
조업수역 또는 어구시설의 수 면위치				
어업의 시기				
포획물 · 채취물의 종류				
허가기간				
승계사유	[] 어업허가를 받은 어 선 등의 상속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등의 매입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등의 임차	
「내수면어업법」 제 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0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사		귀하		
시장 · 군수 · 구청장				

첨부서류	1. 어선이나 어구를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어선이나 어구를 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에 그 어선이나 어구를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종전의 어업허가증 4.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수수로 조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자료: 저자 작성

5. 허가·신고어업의 변경 및 폐업 신고

수산업법상에는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에 대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절차, 또 폐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있는 반면, 「내수면어업법」에는 이러한 변경과 폐업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다.

〈표 5-12〉 「수산업법」상 허가·신고어업의 변경·폐업 신고 조항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어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하 생략)
제57조(변경사항 등의 신고)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1호 서식의 어업허가사항 변경 신고서에 어업허가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이하 생략)
제58조(신고어업의 변경 신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어업의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2호서식의 어업신고사항 변경 신고서에 어업신고증서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이하 생략)
제60조(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폐업신고) ① 법 제40조·제43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어업을 폐업하거나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의 어업폐업 신고서에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이하 생략)

자료: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

「내수면어업법」상에 허가·신고사항에 대한 변경 신고와, 폐업절차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표 5-13〉 허가 및 신고의 변경·폐업 조항 신설(안)

현행	개정안
〈신설〉	「내수면어업법」 제00조(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폐업 등) ①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어업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관청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어업을 폐업하거나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00조(어업의 변경허가) 법 제9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어업의 종류 2. 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3. 어구의 규모 4. 조업 규모 5. 어선, 어선의 톤수 및 주요 제원 6. 포획·채취물의 종류 제00조(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폐업신고) 법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어업을 폐업하거나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어업폐업 신고서에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 저자 작성

6. 허가대장 관련 법적 근거 신설

해면어업은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1조 (어업 허가대장의 기록 관리)에 근거하여, 어업허가의 변경이력을 새올행정시스템 상에서 자동 전산 관리가 되고 있으나, 내수면어업은 법적 근거 미비로 전산 시스템상 관리 기능이 없어 담당자가 별도 수기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수기 가재로 인한 오타 및 누락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행정 업무 효율화를 위해 내수면 어업 허가대장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

〈표 5-14〉 허가대장 기록·관리 조항 신설(안)

현행	개정안
〈신설〉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00조(어업허가대장의 기록·관리)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0호 서식의 어업허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새로운 어업허가를 포함한다) 2. 법 제9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3. 법 제9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예, 어업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어업허가사항, 변경 신고의 수리 및 어업신고사항 변경 신고의 수리 4. 제0조에 따른 어업폐업신고의 수리 5. 행정처분 이력

자료: 저자 작성

〈표 5-15〉 내수면어업 허가대장 신설(안)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 00호서식]

어업허가대장
(내수면어업)

(앞쪽)

허가를 받은 자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소속 단체명	직위
	주소 (전화번호:)	
	허가연월일	허가기간

사용 어선	어선의 종류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승선원 (명), 기관 종류	총톤수(톤), 마력, 선질	길이(m), 깊이(m), 너비(m)	진수 연월일, 조선소명
사용 어구							

허가 어업	구분	허가번호	어업의 종류	조업방법과 어구의 명칭	조업구역과 어업의 시기	포획물 · 채취물 의 종류
	주 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주요기기 및 시설	제한 또는 조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자료: 저자 작성

〈표 5-16〉 내수면어업 허가대장 신설(안) (계속)

(뒤쪽)

※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어업허가사항의 변경 신고 및 어업폐업신고의 수리 등 변경내용
 ※ 행정처분 이력

연월일	처리내용	사유	작성자 (서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자료: 저자 작성

7. 허가·신고 처리 일수 조정

현행 허가·신고 업무 처리 일수가 5일로 규정되어 있는데⁵³⁾, 이는 법률상 수면관리자와의 협의 기간이 14일 이내로 규정⁵⁴⁾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수자원공사, 지역환경청 등 협의 기관도 다양하고 검토 시간도 수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 처리 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상 처리기간란에 “수면관리자 협의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어 행정 실무 상 처리기간을 현실화하여야 한다.⁵⁵⁾ 또한 새올행정시스템 상에서도 수면관리자의 협의 결과를 받으면 그때부터 처리기간으로 산입되도록 전산상 수정이 필요하다. 아래와 같이 서식 개정(안)을 제안한다.

〈표 5-17〉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 개정(안)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4. 22.〉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
(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 기간	5일 (수면관리자 협의기간은 산입 에서 제외)
----------	-----	-----	----------	---------------------------------

신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아래 생략)

자료: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참고하여 저자 수정

53) 내수면어업법 제11조

54) 내수면어업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0조2

55) 신고어업 신고서 서식에 1일로 오기되어 있는 부분도 5일로 수정이 필요하다.

〈표 5-18〉 내수면어업 신고서 개정(안)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6.23〉

내수면어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 기간	5일 (수면관리자 협의기간은 산입 에서 제외)
----------	-----	-----	----------	---------------------------------

신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아래 생략)

자료: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참고하여 저자 수정

06

결론

제1절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는 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제도와 관련하여 총 12가지 개선 과제들을 도출하였다. 우선, 현재 어업허가 신청 시, 주소지 조건이 없어 타 지역주민이 제한 없이 어업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지자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가 신청 관청을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변경하여, 지자체에 주소를 둔 주민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소지 조건 부과를 통해 원거리 타 지역 주민의 어업 행위로 인한 민원과 어업관리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다음 개선 사항은 허가 개수 제한 조항의 신설이다. 자망, 종묘채포업, 패류 채취, 각망, 낭장망 등 여섯 가지 어업 형태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개수 제한이 없어 어업관리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개선 과제로 선정하였다. 다음 개선 과제는 신고어업에 6개월 이상의 거주기간과 연간 60일 이상의 조업일수 조건을 추가하여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폐업, 지위 승계 등 현재 관련 조항과 서식이 없어 현장 실무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업무들에 대해 신규 조항과 서식을 제정해야한다. 또한 이력사항을 전산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가대장에

대한 법적 근거 조항 신설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실무적인 개선 과제인데, 신고 허가 업무 처리 일수에 수면관리자 협의 기간이 고려되지 않아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바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 개선 방안에 대해 각각 구체적인 규정 개정(안)을 도출하여 정리하였다.

〈표 6-1〉 내수면어업법 허가·신고제도 개선 과제

	항 목	개선(안)
1	허가 신청 시 주소지 조건	〈신설〉 허가 신청 시 주소지 조건 추가하여 관할 지역 거주 주민에게만 어업허가 발급
2	허가 개수 제한	〈신설〉 어선(어구) 당 3건
3	신고어업 주소지 조건	〈신설〉 6개월 이상 관할 지자체 거주 조건 추가
4	신고어업 조업일수 준수 조건	〈신설〉 연간 조업일수 60일 이상 조건 추가
5	신고 효력 상실	〈신설〉 준수사항 위반 시 신고 효력 상실 조항 추가
6	허가 지위 승계	〈신설〉
7	허가·신고의 변경	〈신설〉
8	허가·신고의 폐업	〈신설〉
9	허가 대장 관리	〈신설〉
10	준용 규정	조문별 매뉴얼 작성으로 명확화, 또는 삭제
11	허가, 신고 처리기간	“수면관리자 협의 기간(14일)을 처리 기간 산입에서 제외” 문구 추가
12	신고어업 신고서 서식	법률에 5일로 명시, 신고서 서식 상 1일은 단순 오타. 5일로 수정 필요.

자료: 저자 작성

위에서 제시한 정책 제언들이 허가·신고 업무와 관련된 현장 실무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단기적인 처방이라면, 내수면어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정책 노력 또한 필요하다. 「내수면어업법」 제5조 제1항에는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제2항에는 지자체의 시행 계획 마련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내수면어업 현황에 대

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⁵⁶⁾ 또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4조에도 지자체가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 되어있다.⁵⁷⁾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수면 수산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나 지자체의 내수면어업 진흥 계획 수립은 미흡한 실정이다. 어업 허가과 신고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과학적 수산자원평가와 자원관리 계획에 기반한 내수면어업 진흥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2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전체 수산업의 0.2% 정도로 어업 생산량이 미약하여⁵⁸⁾ 그동안 정책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존재했던 내수면어로어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2019년 「내수면어업법」에서 내수면 양식 분야가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분법되어 나간 이후, 법의 적용 범위가 협소해지고, 또한 22조에 따라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준용하여 운영함에 따라 규정의 해석이 모호해지고, 지자체별로 다른 방식의 행정 처리가 이루어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업 허가·신고와 관련 미비점을 분석하고, 어업허가와 관련된 세부 사항(주소지 조건, 허가 개수), 어업신고 기

56) **내수면어업법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수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구체적인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2020. 2. 18.>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2. 3.>

57)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4조(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58) 통계청, 어업생산 동향조사(검색일: 2024.7.19.)

준(거주일수), 신고 준수 조건(조업일수) 등의 규정, 허가 연장 절차 및 어업허가·신고 변경 사항 관련한 조항 등을 제안하였다.

특히 미비점 분석을 위해 내수면어업법과 수산업법에 대한 법률 비교 분석을 실시하고, 내수면어업법 허가·신고제도 상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시·군·구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장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다음으로 수산 분야 법률 전문가 자문을 통해 허가·신고 관련 조항의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전문가 간담회 및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개선안의 실효성과 적합성을 논의하고, 최종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다만,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은 규제의 신설로도 해석될 수 있어 법의 개정 과정에서 규제심사 등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입법 불비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 수산자원 관리와 내수면어업의 진흥이라는 실익을 논리적으로 설득해 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내수면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자체의 효율적인 내수면어업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김대영(2008), 우리나라 내수면어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수산경영론집, 제39권 제3호
- 김대영·이정삼(2007), 내수면 어로어업의 동향과 재편과제에 관한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제19권 제1호, pp.34-52
- 신용민(2013), 연안어업 어업허가 거래 실태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44(1), pp.25-37.
- 신용민(2020),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의 의의와 문제점 분석. 수산경영론집, 51(1), p.1-17.
- 윤광진, 이순태, 조영기, 차철표, & 이광남(2011), 어업허가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입법평가.
- 이광남(2010),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경제분석. 한국법제연구원.
- 이명준(2018), 내수면 양식산업 정책 및 활성화 방안. 한국수산과학회 양식분과 학술대회, 351-351.
- 이순태(2016), 수산 관련 법령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이헌석(2012), 내수면어업허가의 법적 성격과 이전성, 토지공법연구, 제56집.
- 차철표(2005), 수산업법 개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2005년도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후기학술대회 논문집 pp.82-84.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법률 자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법률 제2835호, 1975.12.31.)

내수면어업법(법률 제18755호, 2022.1.11.)

내수면어업법(법률 제14727호, 2017. 3. 21, 일부개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550호, 2024.6.4.),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581호, 2023.2.3.)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17564 판결

수산업법(법률 제295호, 1953.9.9.)

수산업법(법률 제19807호, 2023.10.31.)

수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550호, 2024.6.4.)

수산업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649호, 2024.1.24.)

지방자치법(법률 제19951호, 2024. 1. 9.)

인터넷 자료

규슈어업조정사무소, 어업권, <https://www.jfa.maff.go.jp/kyusyu/engan/kukaku/index.html>(검색일: 2024.8.14.)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전번호 19-0451(2019.12.05.), 해양수산부 - 내수면어업 허가에 대해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19017&rowIdx=7(검색일: 2024.8.13.)

법제처, 법령해석례정보, law.go.kr(검색일 : 2024.8.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검색일: 2024.8.14.)

일본수산청, 내수면에 관한 정보, <https://www.jfa.maff.go.jp/j/enoki/naisuimeninfo.html>(검색일: 2024.8.14.)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어업생산 동향조사, <https://kosis.kr/index/index.do>(검색일: 2024.7.19.)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등록어선통계 kosis.kr, (검색일: 2024.7.15.)

E-Gov, 漁業法, https://laws.e-gov.go.jp/law/324AC0000000267#Mp-Ch_8-At_168(검색일: 2024.8.14.)

Florida Fish and Wildlife Conservation Commision, <https://myfwc.com/license/commercial/freshwater/>(검색일: 2024.8.13.)

Mississippi Wildlife, Fisheries, & Parks, <https://www.mdwfp.com/fishing-boating/freshwater-commercial-fishing>(검색일: 2024.8.13.)

인터뷰/서면 자료

국립부경대학교 신용민 교수 서면자문(2024.8.2.)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박사 서면자문(2024.8.9.)

부 록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도 개선 설문조사

○○시 ○구, 이튿, 연락처

- ☐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 아래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허가 신청자의 주소지가 조업하고자 하는 시군구의 관할 구역안에 있어야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 반면, 내수면어업(양식 제외)에는 이러한 허가 신청자의 주소지 조건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타 시군구 주민이 다른 지역 지자체에 내수면 어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A시 주민이 B시에 위치한 내수면 하천에 자망어업 허가를 신청 가능)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7조(어업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조업근거지(양륙항(揚陸港) 또는 선적항을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36호서식의 어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
2.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의 주소지와 선적항은 그 허가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행정구역 내에 있을 것

- ☐ (Q1-1)내수면어업에 신청자 주소지 조건이 없어서 실무 상 문제점,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 ☐ (Q1-2) 내수면어업(양식 제외) 관련 허가 신청자의 주소지가 위치한 관할 지자체에만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즉, 지역 주민에게만 내수면어업 허가를 발급)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 (Q2) 내수면어업(양식 제외) 관련 매매 또는 상속으로 인한 지위승계를 실무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사용하시는 서식이나 기준이 있다면 답신에 첨부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 ☐ (Q3) 내수면어업(양식 제외) 관련 허가 사항 변경신고와 관련 현장에서는 어떻게 실무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까? 자체 서식이나 기준이 있다면 첨부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 ☐ (Q4) 내수면어업(양식 제외) 허가 및 신고 관련 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허가정수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십니까? 설정하였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언제 설정하였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정하였다면 어업별 허가정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예시)

(예를 들면, 지자체 수산조정위원회를 통해 2000년 설정 등)

○ 허가 신고 정수

	허가	신고
○○강		
○○호		

- ☐ (Q5) 내수면어업(양식 제외) 허가 신고 제도 관련, 신청 서식(별지)이나 기준(별표)이 미비하여 현장 실무에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떠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 (Q6) 위에서 말씀해주신 문제점들에 대해 현장 실무를 진행하시면서 생각하셨던 개선 방안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 ☐ (Q7) 기타 내수면어업 관련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답신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최순 전문연구원(csoon@kmi.re.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최순 전문연구원(051-797-45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연구보고서 발간목록

Ⅰ 2024

01	섬·바다·강 연계 관광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최일선
02	해양 스타트업 실패 자산화 방안 연구	좌미라
03	시민친화적 바닷가 공간 조성에 관한 연구	정지호
04	연안이용 관리 법제 정비방안 연구	최석문
05	특별관리해역 관리제도 재편 방안 연구	최수빈
06	해양관할구역 과세권한의 체계적 배분방안 연구	이혜영
07	어업인의 디지털 전환 수용성 제고방안 연구	오서연
08	수산물 무역(수출입) 단기 전망모형 구축 연구	한기욱
09	어촌소멸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연구	이상규
10	어촌다움에 기반한 어촌공간관리 방안 연구	이승혜
11	파생상품을 이용한 해운선사의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 - 운임선도거래(FFA)를 중심으로 -	김한나
12	내항상선 해양사고 경감방안 연구	허성례
13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김세원
14	해외 항만터미널 확보 전략 연구	김근섭
15	항만 하역능력의 서비스 수준 개선 연구	이화섭
16	국내 무역항 거버넌스 체계 개편방안 연구	김근섭
17	선박의 원격운항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박혜리
18	국제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최나영환
19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정책효과 분석 모형 개발 연구	강무홍
20	한-북미 무역구조 분석 및 물류공급망 변화 대응방안 연구	이성우

2023년

01	자율운항선박 운항을 위한 해상교통관제 대응방안 연구	박상원
02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무역규범의 해양수산분야 영향 분석 연구	임병호
03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항만의 대응방안 연구	이나영
04	연안재해 정보 활용 개선 방안 연구	김찬웅
05	항만의 생활물류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	최석우
06	마을어장 이용·관리 개선방안 연구	마창모
07	해양생태계 복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 사회·생태복원 중심으로 -	최석문
08	주민행태기반 해양정책 수용성 제고 설계 방안 연구	이슬기
09	항만연관산업 고도화 방안 연구	김세원
10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해운선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조아현
11	물류 연계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항만 구축방안 연구 - 항만물류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중심으로 -	서정용
12	어업분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연구	고동훈
13	수산물의 디지털 수출 활성화 방안 연구	이상건
14	항만개발사업의 정책영향평가 연구	이수영
15	해운산업의 미래 변화 예측과 국내 대응 전략 연구	이호춘
16	어선현대화 촉진을 위한 금융제도 개선방안 연구	엄선희
17	연안도시의 쇠퇴와 대응방안 연구	강창우
18	해양범죄 실태 진단을 통한 대응체계 개선방안 연구	민영훈
19	민간기업의 해양환경분야 ESG 활성화 방안 연구	김지윤
20	식량안보를 고려한 수산물 수급관리 방안 연구	허수진
21	지방분권시대의 수산업·어촌분야 대응전략 연구	이호림
22	해운산업 고도화를 위한 선박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김한나
23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물류망 최적화 방안 연구 : 한국-북미 물류공급망 중심	이성우

수시연구보고서 발간목록

Ⅰ 2024년

01	해양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김찬웅
02	한-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 체계 개선 연구	이채령
03	해양안보 MDA 체계 협력적 운용 방안 연구	민영훈
04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전략 방안	한장협
05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연안도시활력 증진 방안 연구	이슬기
06	부산항 물동량 유치방안 연구	김은우
07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향과 우리의 대응:해양수산분야를 중심으로	채수란
08	국내 연안여객선 관광·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이정아
09	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순
10	어업 선진화를 위한 어업관리체계 개편 방안 연구	심성현
11	글로벌 공급망 변동에 따른 해운물류 지원방안	황수진
12	연안 중소선사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정책 지원방안	류희영
13	항만기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김보경
14	해양모태펀드 투자활성화 방안 연구	한기원
15	특별관리해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방안	장원근
16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양식장 안전성 개선 방안 연구	윤미경
17	국가관리연안항 발전전략 수립체계 연구	신정훈
18	글로벌 공급망 대응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발전방안 연구	권보배
19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전략 연구	전혜은

2023년

01	양식어업 비과세 합리화 방안 연구	이정필
02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개념정립 및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최일선
03	항만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 연구	안승현
04	블루푸드테크 전문기관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이동림
05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 요인 연구	이혜영
06	양식장 내 어류 복지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오서연
07	해양플라스틱 재활용산업 공급사슬 기반 조성 연구	이윤정
08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ESG경영 가이드라인 구축 연구	이재호
09	신항만건설사업의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김보경
10	해수욕장 이용객 집계·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이정아
11	유엔 플라스틱 협약의 주요쟁점 분석 및 대응방향 연구	박수진
12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문지원
13	어선의 친환경에너지 전환방안 연구	고동훈

일반연구보고서 발간목록

Ⅰ 2024년

01	한-북극권 청색경제 협력사업 추진 방안	김엄지
02	전환기 글로벌 해양환경규범의 대응력 강화 연구	박수진
03	해양 지속가능성 시범 평가 연구	최희정
04	Scope 3 기준 원양산업 탄소배출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 원양저연승어업을 중심으로	조현주
05	수산물 공급망 관리 개선 방안 연구(한-태 무역을 중심으로)	한기욱
06	신통상규범 확대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 및 대응방안	박혜진
07	탄소배출규제 대응을 위한 컨테이너 선대 교체 수요 추정연구	최건우
08	연안항개발사업의 경제적 편익에 관한 연구	김성아
09	한국과 미동부 항만 간 녹색해운항로 구축방안 연구	김가현
10	비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예측모형 고도화 방안 연구(Ⅲ) -철광석, 화학공업생산물, 기타광석, 잡화를 중심으로	이나영
11	접안 대기시간 감소에 따른 탄소집약도지수(CII) 변화 분석	김보람

Ⅰ 2023년

01	해양수산업 조기경보지수 개발 - 컨테이너 해운시장을 중심으로	권장한
02	AIS 기반 글로벌 선박 배기가스 배출량 분석 연구(Ⅱ) - 우리나라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강무홍
03	우리나라 수산식품 소비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한기욱
04	비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예측모형 고도화 방안 연구(Ⅱ) - 유류, 철재, 모래, 목재, 양곡을 중심으로	이화섭
05	대기행렬모형을 활용한 선박대기비용 절감 편익 산정 연구	조아현
06	항만개발사업 정책효과 세부항목별 효과산정 방법 연구	이종필
07	해양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 연구	최희정
08	국내 해운기업의 ESG 경영 확산 방안 연구	황진희
09	해운 경기순환 분석 및 예측 연구	황수진
10	수산물 공급 안정을 위한 수입수산물 전략품목 관리 방안 연구	박혜진
11	항만산업 여성인력 확대방안 연구	이지원
12	선사공동행위의 규제 및 행동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과 정책방안 연구	류희영

수신연구 2024-09

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제도 개선방안 연구

인쇄 2024년 12월 29일

발행 2024년 12월 31일

발행인 김 종 덕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소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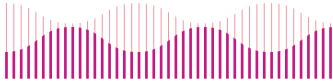
연락처 051-797-4800 (FAX 051-797-4810)

등록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인쇄 더크리P&B (주) (02-737-5377)

판매 및 보급: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02-394-0337

정가 15,000원



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Amendments to the Legal System
for Inland Fishing Permits and Reporting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9 791168 662056

ISBN 979-11-6866-205-6 값 15,000원